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 금융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Financial Enterprises' Expansion Plan
Into Vietnam Market**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高基允

2018年 8月

한국 금융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Financial Enterprises' Expansion Plan
Into Vietnam Market**

指導教授 許 公 碩

高 基 允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6月

高基允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8年 6月

A Study on the Korean Financial Enterprises’ Expansion Plan into Vietnam Market

Ki Yun Ko
(Supervised by professor Yun-Seok Hur)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June. 201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June. 2018.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해외진출의 개념 및 해외진출의 동기	5
제2절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유형	8
제3절 금융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배경 및 의미	11
제4절 선행연구 고찰	19
제 3 장 베트남 금융 산업의 현황과 규제	21
제1절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21
1. 국제 금융 산업의 동향	21
2. 국내 금융 산업의 현황	23
3.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26
제2절 베트남 금융 산업	28
1. 은행산업	28
2. 증권시장	38
3. 보험시장	41
제3절 베트남 금융 규제 현황	44
1. 외국인 투자 정책 규제	44
2. 세제 규제	61

제 4 장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	67
제1절 우리금융지주	67
1. 회사 개요	67
2. 기업 연혁	68
3. 베트남 시장 진출 현황	69
4. 시사점	72
제2절 미래에셋금융지주	77
1. 회사 개요	77
2. 기업 연혁	78
3. 베트남 시장 진출 현황	79
4. 시사점	80
제3절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	85
1. 인터넷 플랫폼 활용	85
2. FP의 전문화를 통한 고객과의 접근성 극대화	87
3. 자산운용의 선진출	87
제 5 장 결 론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6

표 목 차

<표 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	6
<표 2> 주요국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정의 -----	8
<표 3> 연도별 외국인의 對 베트남 투자 동향 -----	22
<표 4> 국내은행 해외점포 현황 -----	26
<표 5> 지역별 해외점포 현황 -----	27
<표 6> 국가별 증권사 해외점포 현황 -----	27
<표 7> 베트남 연도별 환율(대 달러화)변화 추이 -----	31
<표 8> 은행 현황 -----	34
<표 9> 베트남 내 합작투자은행 현황 -----	38
<표 10> 투자 유치 분야 -----	46
<표 11> WTO 가입 후 금융 및 은행업무의 투자개방 일정 -----	47
<표 12> 베트남인구 대비 디지털 사용인구 -----	72
<표 13>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 비율 -----	72
<표 14> 베트남 인터넷 접속 기기 비율 -----	73
<표 15>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란 FP 전용서비스 -----	76
<표 16> 유럽 자산관리 이용 고객의 서비스 종류별 인터넷 이용비율 -----	85

그림목차

<그림 1> 금융업 총 FDI의 대 부가가치 비율 비교	21
<그림 2>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과정	75

논문요약

한국 금융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베트남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새로운 관 광명소로 부상한 천혜의 절경 하롱베이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주식시장에 이 르기까지 베트남 열풍이 거세다.

동북아권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베트남은 2006 년 세계무역기구(WTO)에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경제 개방과 개혁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전체 인구 가운데 만31세 미만의 젊은 인구가 많고 그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높은 교육열, 유교 전통, 빈곤에서 탈피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굳은 의지, 수많은 외 침을 자력으로 물리친 데 따른 자부심, 좋은 토양과 기후 등 우리의 눈에 베트남은 부러운 것이 많은 나라다. 그러나 베트남의 금융 및 은행분야는 제한적이었기 때문 에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6년 초 TPP(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 2016년 2월 4일 뉴 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12개국 간 자유 무역 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협상을 거쳐 체결되었다.)가 체결되었으며 베트남 금융 산업이 해 외시장에 진출 할 기회와 경제 정책, 개별 신용 기관의 활동에 대한 압력을 조성하 고 있다. TPP 가 체결된 국가의 통화유통이 안정적인 환율을 보였기에 베트남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투자의 흐름이 극적으로 증가함으로서 2016년에 금융과 은행 분 야의 FDI 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회사 중 미래에셋은 꾸준하게 수

익을 창출하는 회사로서 성공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는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면서 영업기반을 넓히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 금융 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영업현황과 진출방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현재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주제어 : 베트남, 금융 산업, 해외 진출, 미래에셋, 우리금융지주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베트남은 1975년 남북통일 이후 전쟁의 후유증과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79년 후반부터 계획경제 하에서 부분적인 시장자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도이모이(刷新)정책¹⁾을 채택하면서 이후 베트남 경제는 연평균 7%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다.²⁾ 이에 따라 1995년 250달러에 불과하던 일인당 국민소득도 2017년 일인당 2,304달러에 이르게 되면서 중소득국가로의 진입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

베트남은 도이모이정책 채택과 함께 대외개방에 적극적이고 과거의 역사에 구애되지 않고 세계 각국과 무역협정,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 빠르게 편입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1월에는 WTO에도 가입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단순 가공제품이나 농산물 등에 수출이 치중되면서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단 한 차례도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외국자본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베트남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베트남의 GDP 대비 저축률은 1995년 18%에서 2006년31.7%, 2008년

1) 1986년에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슬로건이며,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창한 개혁 개념이다. 도이 머이(베트남어: Đới mới/ 巋贗, 쇄신이라는 뜻)는 베트남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데, 도이 머이 정책이라고 하면, 이러한 개혁을 일컫는 말이다. 주로 경제(가격 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 생산성의 향상), 금융 면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2)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411666/ado2018.pdf>

3) <http://goo.gl/BsBnbU>

24.6%, 2009년 38%, 2015년 25.7%, 2016년 24.9%로 변동폭이 심하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기타 개도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⁴⁾ 하지만 베트남 금융 산업, 특히 은행산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내자본의 산업자본화가 미약하고 베트남의 주요 산업은 그 자본 조달을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1998년 금융개혁 이전에는 베트남국가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고 사실상 통화정책은 정부의 보조자 역할에 국한되었고 정책금융 등은 소수의 특수은행이 담당하였다(한국금융투자협회, 2011). 하지만 1998년 금융개혁으로 중앙은행인 베트남국가은행은 중앙은행 기능에 치중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으며 상업은행 기능은 국영상업은행과 민영상업은행이 분점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허용되면서 외국은행 지점만이 아니라 100% 외국계 은행, 합작투자은행 등 다수의 외국인 경영참여 은행 등이 베트남에 설립되게 되었다.

베트남 은행산업은 과거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던 체제에서 점차 시장화·민영화의 방향으로 시장지향형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국가가 지배하는 국유상업은행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산업의 대부분이 여전히 국유상업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꼭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국유상업은행은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국영기업 등에 대출을 집중하고 이러한 대출이 기업의 경영여건이나 사업의 수익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이루어짐으로써 부실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금융 산업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베트남은 국내 자본공급이 부진한 국가로서 베트남 은행산업의 시스템적 문제가 국내자본형성과 효율적 중개기능 제고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금융 산업의 성장에 외국자본들의 활발한 유입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해외 은행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따른 금융 산업 발전 동향 및 추이 등에 대한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증권 산업의 경우 2000년 호치민 증권거래소의 개설과 2005년 하노이 증권거래소의 개설 등 베트남엔 2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다.⁵⁾ 두 개의 증권거래소에 상

4)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vietnam/gross-savings-rate>

장기업 수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규모로 볼 때 두 개의 증권거래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소규모 증권회사가 난립한 베트남 증권시장이 갖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베트남의 보험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을 나타내는 보험 침투도는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보험의 저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은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가 이미 상당 수준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비생명보험 시장규모에 비해 생명보험 시장규모가 적은 편이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앞으로 고도의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베트남 보험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시작한 이래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직접투자 국가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금융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하여 베트남 시장 내 금융환경과 규제를 알아보고 한국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5) 호치민 증권거래소 <https://www.hsx.vn>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맞춰 국내 금융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하기 위한 전략을 대내·외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 산업의 성공적인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베트남 금융시장 중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세 개의 시장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해외시장의 진출의 개념과 동기, 전략의 유형 및 배경과 함께 선행연구 고찰까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베트남 금융 산업의 현황을 은행, 증권, 보험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세제와 투자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의 진출한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해외시장 진출의 개념 및 해외진출 동기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기구, 국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해외직접투자란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고 정의한다. 유엔다국적기업센터(UNCTC: UN Center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의 정의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특정기업이 경영의 영속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외국에 기업을 설립, 또는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라고 규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rporation and Development)는 해외직접투자란 해외기업과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수립할 목적을 가지고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⁶⁾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투자국에 직접 투자해서 통상마찰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 또한 유형의 경영자원 및 무형의 경영자원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수출이나 라이선싱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에 장점으로는 투자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실현할 수 있으며 현지의 생산과 관련된 자본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상마찰을 줄이고 시장진입장벽을 회피할 수 있고 현지시장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외국의 법률이나 상관습, 노동시장, 언어, 기업문화 등이 국내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

6) 최용록, '해외투자론', 서울 : 박영사, (1996), p.5

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 및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자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커진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투자자, 투자방법, 투자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비율은 투자사업 수행에 적합한 비율 이상이면 된다. 기타 주요국의 규정을 보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공통점은 통제권확보를 위한 일정비율 이상의 해외지분을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⁷⁾

2. 해외진출 동기

1) 국내 시장에서 한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은행 및 증권사는 국내에서만 안주한다면 더 이상 초과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 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p)

시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표	3.7	2.3	2.9	3.3	2.8	2.9	3.1
전기대비증감	-2.8	-1.4	0.6	0.4	-0.5	0.1	0.2

자료 : 한국은행, 저자 재작성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1, 2012년, 2015년은 (-)성장이고 나머지 연도도 1%미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임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적정 이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 존폐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고려해야만 한다.

2) 외국 금융사의 국내시장 진출

해외진출을 고려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국 금융사의 국내진출로 인한 수익 감소이다. 80대부터 외국 금융사들의 한국시장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7) 김영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1

시작했고 이에 대하여 국내 금융사들은 대응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외국 금융사들은 국내시장에 거점을 만든 후 일반적인 브로커지상품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판매, IB, 수익사업의 노하우나 자금 동원력에서 국내 금융사를 압박했다.

이제 반대로 본다면 해외 이머징마켓을 살펴보면, 정치적 안정성, 투자 적격성, 시장규모 등에 대한 요구조건 충족이 쉽지 않아 국내 금융사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3) 고수익 투자대상의 욕구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령화,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좀 더 높은 수익에 대한 욕구가 금융사의 해외진출 동기가 되고 있다. 이미 발 빠르게 대처하는 금융사에서는 예금에서 투자로, 국내에서 해외로의 자금 이동을 하는 중이다. 이러한 고객(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가 최근 들어 늘고 있는 해외투자펀드의 급증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해외펀드들의 성향은 선진국 보다는 수익성이 높게 요구되어 지는 이머징마켓과 경제성장률이 높게 예상되는 국가로 조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안정된 노후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해외 투자를 선도해야만 하는 현실이 되었다

제2절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유형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국가별로 그 조건이나 법제도가 너무 다양하다.

<표 2> 주요국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정의

국가	실질적인 해외직접투자 정의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업, 지점의 설립 및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 제3국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인수 및 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 자회사 또는 거주자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대부 - 독일연방은행은 국제수표 작성상 의결권 주식의 25%이상의 소유를 해외직접투자로 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은 미국의 거주자나 기업 또는 관련 그룹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비법인 외국 자본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 -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단독사업체, 협동사체, 부동산 - 미국 법인의 해외지점 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출자 자본의 비율이 10% 이상 - 일본 출자 자본의 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매매하거나 또는 중요한 제조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등을 직접투자로 보고, 주식이나 증권취득액은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투자방법, 투자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비율은 투자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율(원칙적으로는 30% 이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주요국의 규정을 보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통제권 확보를 위한 일정비율 이상의 해외지분으로 명시

자료 : 조동성,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서울경제경영, (2004).

<표 2>처럼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시장진출에 가능한 유형만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투자 방식에 따라 현지법인, 지사(지점 및 대표사무소/프로젝트 오피스)로 할 수 있다. 현지 법인은 베트남 기업법의 형태 중 주로 유한책임회사, 주

식회사로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를 할 수 있어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법인은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본사와는 다만 업무적 협력 관계와 TOP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게 되는 형태이고, 지점은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점은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현지에서 영업 활동(특히 판매)을 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하게 되어, 현지 통제가 용이하며, 자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 파견됨으로써, 업무 진행상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줄어들고,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투자 진출 형태에 따라 법률상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후 상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관련(특히 재무)한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다만,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라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 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인수합병(M&A)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베트남 법령에서는 M&A란, Merger & Acquisition의 약자로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에서는 Merger란 기업의 모든 자산, 권리, 부채 등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Acquisition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⁸⁾

여기서 나열한 세 가지 해외시장 진출 전략 유형은 제3장 2절 1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국가정보, 2016

제3절 금융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배경 및 의미

1. 금융 산업의 정의

금융이란, 돈이 남는 곳에서 돈이 모자란 곳으로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중개를 위한 사업을 통칭하여 금융 산업이라 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는 은행을 들 수 있다. 돈이 남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하고 대출에 대한 대가로 대출이자를 받아 은행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금이자로 다시 예금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만약 은행이 없어 돈이 남는 개인과 기업이 돈이 모자란 개인과 기업으로 직접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먼저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빌리는 쪽의 신용도를 알기 어렵고 실제 얼마정도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 지 등의 조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대출을 받는 개인 입장에서도 누가 돈을 대출해줄지 또는 거액을 빌리기 위해 소액을 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은행이 중간에서 중개를 할 때에 비하여 수십 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이 존재하게 된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이른바 금융기관이라는 곳은 각각 자기분야에서 다른 형태로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자금의 중개가 아닌 부동산은 금융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금융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배경 및 의미

1948년 GATT체제 출범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무역·투자 자유화의 흐름과 함께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FTA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는 개방 확대를 위해 계속 진화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가입에 이어 한·미 FTA의 타결로 본격적인 개방경제하의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는 198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 간 상호의존의 심화와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으로 강화되었다. 국가 간 금융시스템이 연결 통합되어 가는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부문의 자산축적에 따른 포트폴리오투자 수요 증가 및 다국적 금융회사의 증가 등으로 선진국을 주축으로 한층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유럽의 小國이던 네덜란드가 16~17세기에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화된 금융의 힘이었으며, 영국이 세계강국으로 일어난 것도 발전된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상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프레드릭 미쉬킨(Fredrick Mishikin)도 최근 그의 저서(The Next Great Globalization)에서 무역의 세계화에 이어 금융의 세계화가 앞으로 신흥개발 국가들의 주요한 세계화 과제가 될 것이며, 금융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신흥개발 국의 장기적 성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한국 역시 금융세계화를 통하여 금융회사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질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제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글로벌화 세계화 국제화의 단어가 경제계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전 사무총장 루지에로(Renato Ruggiero)는 세계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세계경제를 하나로 묶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세계화(globalization)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전략이나 정책이 일국의 국경의 한계를 벗어나(다변화), 현지문화에의 적응을 통하여(다각화),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을 통합해 나가는(고도화) 총체적인 과정을 말하며 그러한 사고방식을 세계화 전략이라 하고, 그러한 활동을 세계경영이라 하며, 국가의 정책을 세계화 정책이라고 하겠다.⁹⁾

한편, 거시적 측면의 국제화는 주로 자본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간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시적 측면의 국제화는 금융회사의 현지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지화(localization)는 시장조사 또는 정보의 제공, 업무중개 등의 단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근거는

9) 최용록, '해외투자론', 서울 : 박영사, (1996), pp.6-8

국제화의 궁극적 기대효과가 주재국에서의 영업을 통한 기업가치의 확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화의 진정한 의미는 현지화를 통한 기업가치의 확대에 있다. 현지화를 통한 국제화의 주요 형태는 지점형, 법인형, 인수형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점형과 법인형은 금융회사의 업무역량을 확대하는 신규확장형 진출형태, 인수형은 기존 금융회사의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한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흡수·통합형 진출형태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국제화에 대한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서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적 범위(geographical coverage)와 진출방식(types of entry)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국제화 형태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지역별 주재(residence)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화특성이라 할 수 있다. 지역화 또는 현지화 기준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국제형(inter-nationalism)과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형(regionalism)으로 구분된다.

진출방식에 따른 금융회사의 국제화 수준은 진입비용과 퇴출 비용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국제화의 경우 진입비용이 낮은 경우에 퇴출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진입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퇴출비용도 동시에 증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업무의 특성에 따라 진입비용이 높을 경우 지역화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Claeys and Hainz, 2006).

진입비용 기준으로는 저비용 현지화와 고비용 현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저비용 현지화는 주로 지점 또는 법인형태의 진출을 통한 현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저비용 현지화의 특징은 진입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국제화의 기대효과 창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낮은 진입비용으로 국제화에 실패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화 또는 차별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M&A방식의 고비용 형태 국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에 대한 결정은 대형금융회사의 성장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라 할 수 있다.¹⁰⁾

대형금융사고가 나면 위험한 곳에서 돈이 이탈하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곳

10) 구본성, 「국내은행의 성장성과 국제화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8), pp.21-23.

으로 돈이 이동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시장국가로 간주되어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나라가 되어 국제적 금융경색으로 외화가 국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외화유출의 쏠림과 환율급등이 심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 현상의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으로 한국경제, 특히 금융의 비대칭적 개방화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¹¹⁾

금융세계화는 국내의 부족한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조달비용을 효율적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신고전과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되어 왔다. 즉,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금융 성장이 국내저축만으로는 모자란 자금을 해외저축을 통해 달성함으로써, 그리고 위험분산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의 경제화를 통해 국내투자를 성장 시키고 나아가 국내 경제성장을 급속화시키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세계화는 보통과 다르게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영이전과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배가시키고, 또 국내 금융부문의 발전을 증진 시킬 것 이라고도 주장해왔다.¹²⁾ 아울러 위험분산이 각국 경제의 안정성과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금융세계화의 경제성장은 기대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금융 불안정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금융 불안정의 결과는 1990년대 외환 위기를 발생시켰다¹³⁾ 세계경제는 자유변동환율체제로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세계경제가

11) 과거에는 FDI라고 하면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으나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비교 분석으로 금융 산업의 양방향 국제 직접투자(inbound FDI+outbound FDI)활성화 정도를 산업별 부가가치로 평가한 금융 산업의 FDI 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31%인 반면 선진국은 평균 218% 수준임.

12) Obstfeld는 자본자유화를 통한 세계 금융통합이 위험공유, 생산전문화, 자문배분, 경제성장을 돕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Obstfeld, 1994), Levine은 이것이 국내 금융 시스템을 강화시켜 성장을 돕는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Levine, 2001). 한편, Prasad 등은 이론적으로 금융세계화는 국내저축증대, 자본비용 저렴화, 기술이전, 금융섹터 발전과 같은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그리고 전문화의 촉진, 보다 우수한 정책의 유도, 자본유입의 강화와 같은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Prasad, Rogoff, Wel, and Kose, 2003.

13) 서울 사회경제연구소, 「금융위기와 금융 세계화」, 서울 : 한울 아카데미, “조복현의 금융세계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2006) pp.36-37.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격랑에 휩쓸리는 것처럼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 폭과 깊이를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 안에서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지만 세계정부가 없는 국제경제의 장에서는 늘 위험이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변동환율제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의 글로벌 금융은 통제 불능의 참담한 시장실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¹⁴⁾

무엇보다 금융 산업이 신용창출 기능이나 자산의 유동화 기능 등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로 번지는 것은 금융의 글로벌화에 기인한 바가 컸다. 우리는 금융의 자유화 진전과 금융의 글로벌화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오류의 심각성에 시달리고 있지만 역으로 능동적으로 흐름을 조정하는 글로벌 역량 역시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금융세계화는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의 주장에 적합한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금융세계화의 발전은 개발도상국과 더불어 선진국의 투자나 경제성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활동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금융·외환위기를 빈번하게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금융세계화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금융통합이나 자본자유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Prasad etc.. 2003). 최근 사례만 살펴봐도 자본자유화에 소극적이었던 인도나 중국은 지난 1~20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페루,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를 기록해서 금융세계화와 경제성장은 큰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로드릭(Rodrik)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100여개 국가의 1975~1989년동간의 경제성장률과 자본자유화, 인플레이션, 투자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그는 자본자유화를 시도한 국가들이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Rodrik, 1998). 최근에 58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에디슨(Edison)등도 국제적 금융통합이 경제성장

14) 노택선, “국제 금융공조 하모니를 울려라”, (2008) 한국경제신문.

을 발전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Edisonetal., 2002).

이처럼 금융세계화가 과거 이론적 주장과는 다르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질의 수준이나 국내 경제 발전이 낮아서이거나(Edisonetal, 2002; Klein, 2005), 금융세계화가 해외 직접투자를 장기로 하는 것보다 단기자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거나(Stiglitz, 2000), 금융세계화의 이유로 발생하는 외환위기 때문이다(Stiglitz, 2000; Prasadetal, 2003).

그리고 금융세계화가 경제성장에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자본유입의 구성이 해외직접투자나 은행대출에서 포트폴리오 주식투자로 변동한 점과 해외직접투자도 직접투자에서 인수합병(M&A)투자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직접투자나 은행대출은 국내 투자와 성장에는 기여하지만, 포트폴리오 주식투자는 국내투자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osworthand Collin, 1999).

금융세계화의 1990년대 자본흐름 특성은 해외직접투자나 은행대출보다 포트폴리오 주식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해외직접투자도 직접투자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M&A투자가 더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 각 나라에서 자본 흐름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은 국내 투자나 경제성장에 발전에 대한 효과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odyandMurshid, 2005).

과거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 시기에는 외환위기도 적게 나타나고 금융위기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로 1950~1971년간에는 금융위기 1회, 외환위기 13회 발생하였으나, 1973년부터 1998년 사이에는 금융위기 45회, 외환위기는 50여 회 라는 많은 횟수가 발생했다(BordoandEichengreen, 1999).

자본 자유화는 해외단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대출 증가, 거품 형성, 해외자본 유출 순서로 인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생한 수많은 외환 위기들은 거의 대부분 자본자유화 이후에 발생했고 자본자유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Kaminsky and Reinhart, 1999;Demirguc-Kuntand Detragiache, 1998).¹⁵⁾ 그리고

15)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분석하고 있는 Radlet and Sachs(1998)나 Fruman and Stiglitz(1998)eh

자본이동의 증가가 위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본이동성이 큰 나라일수록 위기가 발생 시 위기극복 비용이 더 많이 든다(Edwards, 2005).

금융세계화와 자본자유화가 외환위기를 더 크게 발생시키는 이유를 확대해서 본다면 자본시장을 개방한 국가의 국내금융제도의 제도적 취약성 때문이거나, 자본자유화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거시적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감독과 규제 등 금융제도의 취약성이나 미비가 외환위기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거시 경제적 취약점은 대체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방만한 운영과 국제수지 적자로 나타나며 이는 환율불안정과 투기적 공격을 낳아 외환위기를 초래한다(IMF, 1998).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감독과 규제의 소홀함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자산운용의 위험을 증대시켜 해외자본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것이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일으켜 외환위기를 야기 시킨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재화시장과는 달리 금융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금융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투기적 행동과 위험행동 강화를 발생시켜 외환위기를 초래한다. 정보비대칭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이동이 경기 순응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유입국의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켜 큰 위험을 감행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불확실성은 외환거래에서의 투기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들거나 자본이동에서 단기화나 투기적 포트폴리오투자를 강화시키도록 만들어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¹⁶⁾

이외에도 국제적 전염효과와 자본이동(Capitalflow)구조의 변화도 외환위기를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국제적 금융연계성이 증가하고 보다 높은 수익과 보다 다양한 자산구성 분산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자신의 국제적 보유 몫을 늘리게 됨에 따라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Prasadetal, 2003).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자본이동의 현상이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 주식투자의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금융세계화의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다.

16) 자본이동의 경기순응성에 대해서는 Stiglitz(2000)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Mishkin(1999)을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활동의 단기화와 투기화에 대해서는 Davidson(1999)과 조복현(2003)을 참조.

증가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자본유출입 크기의 변동성과 자본거래의 투기성은 커지게 되는데, 이것 역시 외환위기의 발생을 초래 한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는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통제 불능의 지나친 금융의 세계화가 불안정요소를 심화시킨 것과 같이 적절하게 규제된 금융의 세계화는 오히려 불안정 요소를 상쇄시키고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중요한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극단을 피하는 적절한 금융 개방의 범위와 전략이 요구된다. ‘닥치면 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해외진출도 심각한 문제이며,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데 건너지 않고 깨질 때 까지 두드리고만 있는 한국 경제의 Inbound-only 글로벌화는 분명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17) 서울 사외경제연구소, 「금융위기와 금융 세계화」, 서울 : 한울 아카데미, “조복현의 금융세계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2006), pp.36-3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중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일반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문헌은 풍부한 편이나 베트남 금융 산업에 대한 연구문헌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베트남 금융 산업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금융투자협회(2011),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의 베트남 금융산업 동향 및 전망(2017.07),(2018.2), 베트남 진출 한국은행들의 영업현황 및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2017) 편찬투언 등의 연구가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중국등 타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¹⁸⁾가 있으나 금융회사 전반에 관한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로써, 시간의 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국내 금융사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베트남 해외진출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⁹⁾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베트남 금융 산업과 금융시장 현황(2011)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이머징마켓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이머징마켓지원센터를 창립하여 진출지원을 위한 자료 편찬,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해왔고 2011년에 5개국의 새로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베트남을 포함 시켰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기원하며 현지 산업 및 경제현황, 금융 산업 전반에 관한 현황,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베트남 진출 한국은행들의 영업현황 및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 편찬투언(2017)은 베트남 내 금융 산업 중 은행부분에서 진출한 한국기업(신한은행)과 베트남은행(Vietcombank)과의 비교 분석으로 영업 확대에 대한 장벽과 현지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최근 베트

18) 서병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9

19)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전반에 걸쳐 해외진출에 있어 필요한 점과 현재 부족한 점을 연구한 자료임

남 경제현황과 변경된 외국인 투자규제 및 세계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여 베트남 진출의 과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겠다. 베트남 진출 한국은행들의 영업현황 및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탄투언(2017)역시 분야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고 영업현황과 성과분석에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금융시장을 은행, 증권, 보험시장으로 넓히고 베트남 금융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전략을 완성하는 단계로 설명하겠다.

제3장 베트남 금융산업의 현황과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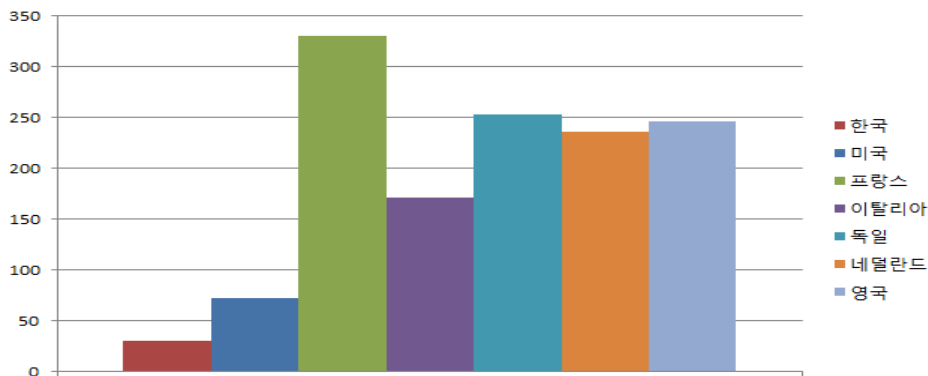
제1절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1. 국제 금융 산업의 동향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은 금융기관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데 해외투자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I/O FDI수준은 2003년 말 투자 잔액 기준으로 31%로 주요 선진국들의 금융 산업 부가가치의 218% 수준과 비교하여 금융업의 FDI활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별로 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랑스 금융업 FDI는 자국 금융업 부가가치의 3배 이상의 규모를 나타내며 가장 활발하게 FDI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도 FDI규모가 부가가치의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FDI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금융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으로 평가할 경우 미국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금융업 총 FDI의 대 부가가치 비율 비교

(단위 : %)



자료 : R.Dani. "Who Needs 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 2008 p.433

또한 각국의 FDI활동의 특성을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로 나누어 보아도 금융 산업이 발전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도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 양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금융선진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금융 중심지 또는 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선진금융기법을 배우고, 주요 국제금융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독일, 스웨덴 등 금융 산업의 발전정도가 다소 낮은 국가들의 경우 금융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활성화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금융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제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금융업의 동반 해외진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이들 국가들의 경우 금융 산업의 발전정도가 다소 부진하여 외국인 투자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²⁰⁾

베트남 외국인 투자 현황을 살펴볼 경우, 2016년 6월말 기준, 베트남 신규투자 실적은 건수로 약 1천145 건이며, 총 투자금액은(증액투자 금액을 포함한 수치임) 약113억 달러 수준임(아래 <표 3> 참조).

<표 3>연도별 외국인의 對 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신규투자 건 수	1,237	1,191	1,287	1,530	1,588	2,013	1,145
총 투자금액	19,887	15,619	16,348	22,352	20,231	22,760	11,285

자료 : 베트남 통계청, 저자 재작성

20) 김득갑 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2007), pp. 102

국별로 살펴보면, 실행 기준 대만이 최대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순인데,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2. 국내 금융 산업의 현황

금융기관 해외투자 확대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두 가지 견해를 보면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화의 고평가 현상이 완화되고 수출이 증대될 수 있으며 해외투자자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규모 해외투자자산은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자본의 해외유출이 촉진될 경우 국내자금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 및 고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의 금융시장 간에 자금이 급속히 이동할 수 있음에 따라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²¹⁾

강종구(2007)는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가 효과적으로 확대될 경우 거시경제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Equilibrium)모형²²⁾을 통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확대는 총생산을 증대시키며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해외투자 확대 이후 상당기간 동안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국내총생산, 고용 및 설비투자가 확대된 이후 총생산, 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변수의 안정성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투자 자산이 여러 충격의 부정적인 효과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해외투자 확대이후 금융기관의 자산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제고되며 국내 금융기관 수신금리는 상

21) 강종구, 「금융기관 해외투자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2007). 제310호.

22) 각 경제주체가 최적화를 도모하는 시장경쟁 모형 하에서 금융기관 해외투자관련 규제의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가 금융시장, 외환시장, 노동시장, 수출입규모, 국내총생산, 물가, 국민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투자가 확대된 이후 외부충격이 발생한 경우 거시 경제적 변동성이 해외투자 확대이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모형

승하고 여신금리는 하락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들의 해외수익 비중은 40%를 넘고 해외자산 비중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내금융업의 글로벌화 수준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와 더불어 금융·물류 등 서비스부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 중에서도 금융 산업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DeutscheBank, UBS, Citi, Santander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은 글로벌화를 통해 지속 성장 유지를 가져왔다. 21세기 후기 사회는 제조업보다는 금융서비스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확대가 긴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 또는 금융세계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금융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에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첫 번째 과제는 신 시장 개척을 통한 고객기반 확충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성진화이다. 국내경제의 저성장과 국내시장의 경쟁격화는 금융회사들의 이익창출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국내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 고객들은 생산비 절감과 현지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 회사채 발행, 해외 IPO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업 고객들의 이탈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 고객들도 최근 직·간접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외펀드를 설정·운용하거나 현지 대출을 제공, 현지 보험

을 판매한다면 고객만족도를 높여 국내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과제는 글로벌 금융회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로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고 해외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일부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졌으나, 금융시장에서 인수, M&A 중계자문, 기업 구조조정 등 투자은행 업무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없다.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도 토종 글로벌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투자환경의 조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네 번째, 선진국에 비해 금융규제의 과다 및 감독분야의 취약성도 금융선진화를 가로 막는 제약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Heritage Foundatio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특정 국가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경제자유도 지표가 세계 평균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금융 감독의 상시감시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금융 감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새로운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 전문 인력의 부족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 과제이다. 과거부터 금융규제가 강하여 위험관리를 고도화하거나 금융기법을 습득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고급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특히 원활한 영어구사능력을 겸비한 금융기술 인력의 수는 더욱 부족한 바, 글로벌 금융인재 육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미국 발 신용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금융 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자 기회가 됨은 분명하다. 그 기회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중요성의 제반 요건들을 활용함에서 비롯되고 위협이라 함은 다섯 가지로 언급한 국내금융 산업의 낙후된 준비상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은 이미 선택이 아닌 성장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위협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금융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1997년 말 국내 은행 해외점포수(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사무소)는 257개에 달했으나 부실해외점포 정리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8년 말 134개로 감소한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어왔다. 또한 IMF외환위기 이후 IT, 전자, 조선, 자동차산업 등은 성공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은행업의 해외진출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아시아 129개, 북미 21개, 유럽 22개 등 총185개(39개국)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기업 및 교민 등의 현지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계화라 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해외점포 숫자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감소 또는 정체해 오다, 최근 국내기업의 진출과 영업활동이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19개), 중국(16개), 인도(15개), 미얀마(13개), 홍콩(12개), 일본·인도네시아(8개)등 아시아지역이 129개로 전체의 69.7%를 차지한다. 아시아 중심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해외부문이 국내 은행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현지에서의 영업형태를 고려할 때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은 영업기반 구축의 초기 단계에 불과 하다고 하겠다.

<표 4> 국내은행 해외점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증감
현지법인	46	50	52	+7
지점	70	71	76	+2
사무소	54	57	57	+5
총계	170	178	185	-

자료 : 금융감독원, 저자 제작성

<표 5> 지역별 해외점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15년 말	'16년 말	'17년 말	증감
아시아	114	122	129	+7
유럽	22	21	22	+1
북미	21	21	21	-
기타 지역*	13	14	13	-1
합계	170	178	185	+7

* 중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자료 : 금융감독원, 저자 제작성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수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17년 말 기준으로 13개국에 진출하여 63개의 해외점포(현지법인 48개, 해외사무소15개)를 운영 중이고 지역별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50개(현지법인 36개, 해외사무소14개), 그밖에 미국 8개, 영국 4개, 브라질 1개이다.

<표 6> 국가별 증권사 해외점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아시아								미국	기타	합계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기타			
현지법인	36	8	11	5	5	3	-	4	8	4	48
사무소	14	8	-	2	1	-	3	-	-	1	15
합계	50	16	11	7	6	3	3	4	8	5	63

자료 : 금융감독원, 저자 제작성

제2절 베트남 금융 산업

이 절에서는 베트남 금융 산업을 크게 은행 산업, 증권 시장, 보험 시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후자에서 다루어질 사례에서 우리금융지주는 은행과 보험 영역에서,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증권 시장분야에서의 해외진출 통해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1. 은행산업

1) 특징

198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의 금융 산업은 베트남국가은행(SBV)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 은행 기능을 독점하는 체제하에 있었다.²³⁾ 하지만 전면적인 계획경제시스템 하의 독점적 은행체제가 1986년 이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되지 않게 되자 베트남은 1988년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부문을 분리하여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이원적 금융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해 베트남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에 전념하고 상업은행은 비록 국가 소유하에 놓여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상업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다.

1990년 10월 [은행법]의 제정으로 시장지향형 금융제도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이 [은행법]에는 금리정책 개혁, 민영 상업은행 및 외국계 합작은행의 설립 허용, 은행의 경영효율성 제고, 외환관리 완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한국금융투자협회, 2011). [은행법]에 근거하여 1991년에 처음으로 민영상업은행이 설립되고 1992년에는 외국계은행의 지점 개설이 허용되면서 은행산업의 시장화가 추진되었다.

베트남은 [은행법]을 근거로 해서 1990년대 지속적으로 은행산업의 민영화, 시장화를 추진하였다.1990년만 해도 베트남의 은행산업은 중앙은행인 SBV와 국

23) 베트남중앙은행 이외에 외환업무에 특화된 베트남무역은행과 장기프로젝트금융을 담당하는 투자개발은행 등 두 개의 특수은행이 존재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2011,19)

유상업은행인 SOCBs를 제외하면 소규모의 소수 신용조합(credit cooperatives)만이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불과했으나 1991년 처음으로 민영상업은행이 설립되고 1992년 외국계은행의 지점 개설이 허용된 후 급속도로 은행수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초에 벌써 은행 수는 60개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는 주식제은행, 외국은행과의 합자은행, 대규모 신용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Anwarand Nguyen, 2011). 특히 개혁개방 초기부터 외국은행의 시장진입이 허용되면서 이미 1995년 9월에 외국은행의 지점이 20개, 대표사무소가 60개에 이를 정도로 외국은행의 베트남 금융 산업 진출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베트남의 금융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은 1987년 도입된 외국인투자법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전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8년 0.32십억 달러에서 1996년 9.0십억 달러로 이기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베트남은 주변 동아시아 국가와 달리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를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넘겼지만 2000년대 들어 여전히 베트남 은행산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누적과 비효율적 경영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은 2001년 4월 베트남에 대한 빈곤감축 및 성장촉진 차관을 제공하면서 베트남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강조하고 은행산업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후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등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국영상업은행을 통해 국영기업들로 지원된 정책 자금이라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정계룡 외, 2010).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누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은행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크게 성장하였는데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급증하는 2000년부터 연평균 30% 내외의 대출 및 예금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오랜 전쟁과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 과정을 겪으면서 은행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아직까지 금융기관에 유입되지 않은 지하경제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자금이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베트남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전체 인구의 약 6%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개인예금,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의 소매금융이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 (정계룡 외, 2010,128-129).

2)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

중앙은행은 1951년 설립된 베트남중앙은행은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처럼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정부 각 기관의 은행 및 외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설립 및 해산 관련 인가 업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다시 말해, 외국계 은행의 지점 설립, 현지 은행에 대한 지분투자 및 M&A,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²⁴⁾

베트남 중앙은행이 이용하는 이자율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1)재할인율(Refinance Rate): 일반적인 의미의 재할인율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만기 전에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지불하는 할인율이다.

(2)할인율(discount Rate): 이는 시중은행이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채권(국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만기 전에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지불하는 할인율이며, 보다 자금이 급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3) 기본이율(Base Rate): 베트남 정부는 시중 은행들 간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기 위하여 기본이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민법(Civil Code)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환율제도는 1999년 2월, 일일 변동 폭을 전일 대비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달러화에 연동하는 점진적 변동환율제도 도입하였는데, 이는 1997~8년 달러 대비 베트남 동화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환율의 불안정성을 보다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손승호, 2007).

현재, 베트남 중앙은행은 달러에 페그된 환율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화폐가치 하락 및 세계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24)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통할 부서는 기획투자부(MPI)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및 감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음.

일일 환율 변동폭을 3%에서 1%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참고로, 베트남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시장평균환율, 중앙은행의 규제범위 내에서 개별은행이 고시하는 은행 대고객환율,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공식 시장환율 등이 있는데 대고객 환율은 현찰매입률, 전신환매입률, 매도율 세 가지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전일 은행 간 매매율 평균치를 당일 기준 환율로 고시하고 개별은행은 이에 0.25% 이내에서 대고객 및 은행 간 매매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적인 환율의 변동 추이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걸 < 표 6 >에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다.

<표 7> 베트남 연도별 환율(대 달러화)변화 추이

(단위 : VND)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환율	17,941	18,932	20,828	21,036	21,246	21,246	21,890	22,611

자료 : 베트남 중앙은행, EIU, 환율은 매 연말(end-period)기준 작성

중앙은행의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허가의 공통 요건은 크게 다음의 4가지임.²⁵⁾

(1)인허가 신청 3년 전부터 중앙은행 심사시까지 본국에서 은행법령 및 기타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함.

(2)국제영업 경험이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아야 하며,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능력이 있어야 함.

(3)자본건전성 요건으로 인허가 신청 전년도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무수익여신 (NPL)²⁶⁾ 비율 3% 이하를 충족해야 함.

(4)베트남 중앙은행이 해당 외국계 은행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 베트남 중앙은행과 협력 관계²⁷⁾를 유지해야 함.

위의 언급한 4가지 이외에도 베트남내 외국계 은행설립 인허가 조건에는 국제적 신임도, 베트남 법규 위반 여부, 베트남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여부 등

25)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허가 공통 요건(손승호, 2010)

26) 현재 베트남내 무수익여신(NPL)의 기준은 3개월 이상 부실채권을 의미함.

27) 해당 금융기관과 베트남 중앙은행간 MOU 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문 등을 의미함.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여건들이 존재해 외국 금융기관의 대한 인허가의 결정은 베트남 정부 판단의 거의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금융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저자본금 인상하였다. 2007년 말 기준,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 규모는 현지 법인 1조 동(약 62.5백만 달러), 국영상업은행 1.1조~2.2조 동, 상업은행 1,610억 동(10백만 달러) 등이고, 현지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 은행의 모은행 자산규모 200억 달러이상 및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이상이어야 함(손승호, 2010). 2011년 1월, 베트남중앙은행은 정부령(No: 10/2011/ND-CP)을 통하여 2011년 말까지 대부분의 상업은행에 대한 최저자본금을 3조 동(약 1.5억 달러)으로 상향하였다. 이는 특히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베트남 자체 금융시장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 국영상업은행

베트남의 국영상업은행(SOCB:state-owned commercialbank)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상업은행으로서 2011년 3월 현재 대외무역은행, 투자개발은행, 농업농촌개발은행, 산업무역은행, 메콩델타주택은행, 사회정책은행 등 6개가 있다. 국영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상업은행이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은행이다. 국영상업은행은 당초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후 1988년 이후 상업은행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영상업은행에 비해 규모가 크고 베트남 전체 금융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4대 국영은행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외환거래 전문은행으로 출발했던 베트남대외무역은행(Vietcom Bank: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은 1963년 설립된 국영상업은행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2011년 3분기 기준 총자산은 333.7조 동(약158.9억 달러), 영업이익은 10조 동(약 4.7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은행의 수출입관련 금융은 최근 4~5년 동안 연 20~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3분기 기준 베트남 수출입 관련 전체 금융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대외무역은행은 100여 개 이상의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의 베트남지점들의 외환거래센터 역할을 할 정도로 외환거래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은행이다.²⁸⁾

베트남대외무역은행은 당초 정부 전액 출자로 설립되었지만 200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지분의 일부가 민간 소유화되어 2010년말 현재 베트남정부 90.7%,내국인 투자자 6.4%,외국인 투자자 2.9% 등으로 지분이 분포되어 있다.²⁹⁾ 이는 베트남대외무역은행의 점진적인 민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외무역은행은 증권회사 등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도 상당량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국영상업은행 중에서도 경영성과가 매우 양호한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³⁰⁾ 한국의 산업은행에 해당하는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은 1957년 설립되었으나 1995년 이전에는 정부의 경제 인프라 구축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

199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업은행으로서의 여수신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주요 기능은 국내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자금의 지원이다. 이 은행은 다른 민영상업은행과 보험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기업은행에 해당하는 베트남산업무역은행(Vietin Bank: Vietnam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Industry and Trade)은 1988년에 베트남 중앙은행(SBV)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2010년 기업대출이 총 대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금융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영 상업은행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1) 베트남산업무역은행도 200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민간 투자자의 주식보유가 가능해졌으며 2010년말 현재 베트남 정부의 지분은 89.2%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1). 다른 국영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민영상업은행 등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역시 점진적인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의 농협은행에 해당하는 베트남농업농촌개발은행(Agri Bank: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은 1988년 설립되어 주로 농업부문과 농촌개발을 위한 자금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은행은 한국의 농협 조직이나 중국의 농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걸쳐 지점망을 갖고 있어 직원수와 거래고객수에 있어서도 베트남 최대의 국영상업은행이다. 2009년말 기준

28) 한국금융투자협회, (2011)

29) 한국수출입은행, (2011)

30) 한국금융투자협회, (2011)

으로 베트남 은행산업 총자산의 16%,총예금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제1 위 규모의 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 2011).

4) 민영상업은행

<표 8> 은행 현황

구분	국영상업은행	민영상업은행	합작은행	100%외국 단독법인	외국은행 지점	외국은행 사무소
개수	5	34	4	5	51	52
구분	주요은행명					
국영상업은행	농업은행(Agribank), 공상은행(Vietinbank), 투자개발은행(BIDV), 대외 무역은행 (Vietcombank), Mekong Housing Bank					
국영정책은행	Social Policy Bank, Vietnam Development Bank					
민영상업은행	ACB, Sacom Bank, Exim Bank, SeA Bank, Techcom Bank, Military Bank, DongA Bank					
합작은행	신한베트남은행(한국), Vietnam-Russia JV Bank(러시아), VID Public Bank(말레이시아), Indovina Bank(대만), Vinasiam Bank(태국)					
외국은행지점	신한은행 호치민 지점, 기업은행 호치민지점, 외환은행 하노이지점, 우리은행 하노이 /호치민 지점, 국민은행 호치민지점 등 기타 외국계 은행 지점					
외국은행 사무소	산업은행 호치민 사무소 외 52개소					

자료 : IBK 기업은행 호치민 지점 (2014년 12월 기준)

민영상업은행은 1990년대 출범 초기 주로 국영기업이나 국영상업은행의 출자로 설립되었지만 이후 점차 민간자본 및 외국계자본이 민영상업 은행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민영상업은행의 주주 구조는 민간자본,국영상업은행,국영기업,외국계 자본 등 매우 다양하며 중소기업 금융 및 소매 금융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영상업은행의 법적 자본금 규모가 작아 글로벌 경제위기나 부동산버블 붕괴 등 내외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베트남 정부는 민영상업은행의 법적자본금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국영 상업 은행이 전체 은행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민간 은행 및 외국계 금융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어 소규모 은행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또한 다국적 금융 기관인 HSBC, ANZ 등이 전국에 지점을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치열한 시장 경쟁 및 인수 합병을 통한 은행 산업 구조 조정 또한 전망되고 있다. 1개 예금 보험공사, 17개의 파이낸스 기업(12개 외국계, 5개 국내), 13개의 리스기업(4개 외국계, 9개 국내), 915개의 신용조합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민영상업은행 중 자본금 규모가 3위안에 드는 베트남수출입은행, ACB, 그리고 Sacombank에 대해서 간략히 그 경영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Eximbank

베트남 수출입은행(Eximbank)은 1990년대 초반 최초로 설립된 민영상업 은행의 하나로서 출범 초기에는 주로 유럽계 베트남 원조자금의 관리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일반 민영상업은행이 행하는 모든 업무로 사업영역이 확대되었다. Eximbank는 지분의 분산이 폭넓게 되어 있는 은행으로서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1개,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2개이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관투자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상장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개인투자자 지분도 없다. Eximbank는 국영상업은행들과는 달리 자회사는 없으나 재무적 투자자로서 일부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다.

(2) AsiaCommercialBank(ACB)

베트남 내 민영상업은행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ACB는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 현재 5대 베트남 민영상업은행에 포함되어 있다. 2006년에는 하노이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되었으며, 지분구조는 전체 지분의 70%가 베트남 국내지분으로 이중 63%는 베트남 내 소액주주, 7%는 베트남 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Connaught Investors, Dragon Capital, IFC, Standard Chartered Bank 등의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다. 특히 SCB는 이미 2005년 6월에 ACB의 지분 8.56%를 장외거래를 통해 인수한 바 있다 (정계룡 외, 2011).

(3) Sacombank

Sacombank는 1991년에 호치민시에 있던 4개의 신용기관이 합병되어 설립되었고, 2006년 7월 호치민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외국인 파트너로는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과 5.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IFC, 8.73% 지분을 가지고 있는 Dragon Financial Holdings가 있는데, 외국인의 지분율이 총 30%이다.

Sacombank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면서 금융지주회사 체계 내에 금융부문 이외의 다양한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Sacombank는 금융부문 이외에서 전체 수입의 25%의 수입을 올리는 등 경영다각화에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은행은 중국 남부와 라오스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베트남 은행으로서 일찍부터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2011, 40).

5) 외국은행지점(Foreign Banks' Branches in Vietnam) 및 100% 외국계은행(Wholly Foreign-owned Banks)

(1) 외국은행지점

2010년 말 기준, 외국은행지점은 총 48개이며, 법정자본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15백만 불 이상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은행지점은 더 늘어나서 총 50개이다. 한국의 경우 우리은행(하노이, 호치민), 외환은행, Citibank가 베트남에 지점이 있다. 현재 베트남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2) 100% 외국계은행(Wholly Foreign-owned Banks)

베트남은 2006년 자본금이 전액 외국계 소유인 은행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베트남이 외국계 은행의 설립을 비교적 빠르게 허용한 것은 우선 2001년 초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때 2010년까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한 데다 베트남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협조를 얻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베트남의 자본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금융부문에 대한 FDI 필요성이 있었고, 셋째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자본조달에 외국자본의 도입 필요

성이 있었기 때문이다.³¹⁾

6) 합작투자은행(Joint Venture Banks in Vietnam)

1990년대 초 베트남 정부는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베트남 자본과 외국 자본의 합자로 이루어지는 합작 투자은행의 설립을 장려하였다.³²⁾ 현재 베트남에 있는 5개의 합작투자은행(Joint Venture Banks)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등의 은행자본과 베트남 국영상업은행들이 합작하여 설립한 은행들로서 자본금 1,500만 달러 이상의 견실한 현지은행들이다.

그런데 2006년부터 100% 외국계 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합작투자은행의 지위가 모호해지고 있다. 법적으로도 베트남 은행법 제12조(금융기관의분류)에는 합작은행을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조(용어의 정의)에는 외국계 금융기관을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베트남 법에 의해 베트남에서 설립된 합작투자은행의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정계룡외,2010,140). 사실상 1990년대초와 달리 외국 금융자본 입장에서 현재 합작투자은행이 독자적인 현지법인 설립이나 은행지점에 비해 유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더 이상 베트남에 합작투자은행이 설립되지 않는 이유로 생각된다. 일부 합작투자은행의 경우 외국 자본이 베트남자본을 인수해서 100% 외국계 투자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한다. <표 8>은 5개의 합작투자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지분구조 및 법정 자본금을 나타낸 것으로서 합작투자은행의 대부분은 베트남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간 50대 50의 지분구조를 갖고 있다

31) 정계룡 외,(2010), pp.142-143

32) 정계룡 외,(2010), p.140

<표 9> 베트남 내 합작투자은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Shinhanvina Bank	Indovina Bank Limited	Vinasiam Bank	VID Public Bank	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
베트남 측 파트너	Vietcombank	Vietinbank	Agribank	BIDV	BIDV
외국인 파트너	신한은행	Cathay United Bank(대만계)	Siam Commercial Bank & Charoan Pokphand Group(태국)	Public Bank Berhad(말레이시아계)	JSC VTB Bank(러시아)
지분율 (베-외)	50:50:00	50:50:00	34:33:33	50:50:00	50:50:00
법정자본금	75	165	62	64	62.5

자료 : 한국금융투자협회(2011), 저자 제작성

2. 증권시장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기존 국유기업의 주식제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3-2000년 사이에 총 568개 국유기업의 주식제화를 실시하였다 (정정현 외,2006). 하지만 국유기업의 주식제화가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경영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이미 1990년대 한국 등 주변국가의 증권거래소 등 자본시장에 대한 경험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증권법, 기업법 및 투자법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3대 법령을 제정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노력하였다 (박대근 외, 2002; Leung,2009)

1) 증권거래소

베트남은 1996년 증권시장 관리기구인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y Commission:SSC)를 설립하여 베트남 증권시장 개설을 추진하였다. 국가증권위원회는 증권시장의 감독과 신규상장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설립 초기에는 독립된 기구였지만 2004년에 정부부서인 재무부 산하에 편입되었다(한국금융투자협회, 2011,49). 베트남은 1998년 ‘증권 및 증권시장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에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에 호치민증권거래소가 먼저 설립되었고 2005년에는 수도인 베트남 북부의 하노이시에 하노이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베트남에는 현재 두 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다. 호치민증권거래소는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비해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8배 정도로 크고 기업 공개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 등 상장요건도 엄격하다(외교통상부, 2011, 50).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호치민증권거래소가 154조 동, 하노이증권거래소가 84조 동이다.그런데 2000년 출범 당시 상장기업이 2개에 불과했던 호치민증권거래소의 경우 2012년6월의 상장사 수는 2008년 1월의 상장사 수 141개에서 4년 반만에 2.1배나 증가한 것으로서 베트남 증권시장의 높은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³³⁾ 한편 국공채 거래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하노이증권거래소는 주식보다 채권 거래가 활발하여 2012년 6월 현재 주식수보다 많은 510개의 채권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 시가총액도 주식시가총액보다 많은 169조 동이었다. 베트남은 두 개의 증권거래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의 장외거래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장외시장이 거래 쌍방간의 정보 불균형 등으로 효율적인 시장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09년 6월 하노이 증권거래소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였다.2010년 말 현재 이 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수는 109개이며 2010년에 9개의 회사가 비상장 주식시장(UPCom)의 등록을 취소하고 하노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UPCom이 주식회사의 순조로운 증

33) 하노이증권거래소도 2005년 출범 당시 상장기업수가 5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말 87개,2007년 말 112개,2008년말 168개,2009년말 257개,2010년말 367개로 매년 빠른 속도로 상장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다 (HanoiStockExchange, 2011).

권거래소 상장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Hanoi Stock Exchange, 2011, 37).

2) 증권시장의 현황 및 구조

(1) 채권시장

주로 하노이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채권거래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된다. 국채 및 정부보증채 발행 실적을 보면 국고채의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고채 이외에도 정부보증채로서 사회정책은행, 베트남 투자개발은행, 베트남 고속도로투자개발회사 등이 채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였다.

하노이증권거래소의 국공채발행시장에는 2010년 26개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17개의 외국계 은행이 참여하였다. 국공채는 입찰 방식으로 매도되며 장기채보다는 5년 이하의 중기채권이 주로 거래된다(Hanoi Stock Exchange, 2011).

2010년 국공채 발행시장의 주요 중개자는 국영상업은행인 베트남대외무역은행의 자회사인 증권회사와 베트남투자개발은행의 자회사인 증권회사, 그리고 국영 베트남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증권회사가 각각 24.56%, 24.06%, 6.73%를 차지하여 (Hanoi Stock Exchange, 2011, 35) 국공채 채권시장이 주로 국영금융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공채와 달리 회사채의 경우 베트남 국내 통화로 발행된 회사채의 수량이 많지 않고 주로 발행자와 매입자 간 직접 협상의 형태로 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를 통해 판매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채권시장에서 외화로 발행된 회사채 수량은 꾸준히 큰 성장을 하여 발행 채권의 총 금액이 3.4억 달러에 이른다. (베트남은행증권회사, “2012년 1분기 베트남의 거시경제와 증권시장 현황”, 2012).

(2) 주식시장

베트남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주식시세인 호치민증권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 (VN-Index)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개설 당시 주가지수는 100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년 만에 571포인트까지 상승

하였고 다시 2003년 말에는 120-130포인트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미국 증시 등의 호황세 영향으로 베트남 증시의 주가지수도 2007년 평균927로 정점에 다다랐으나 2007-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아 2010년 9월 말에는 450 ~ 500수준에서 횡보세를 나타내었다 (외교통상부, 2011).³⁴⁾

하지만 2012년 들어 베트남 국내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베트남 경제가 안정적 국면을 유지하면서 주식시장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로 2011년까지도 하락세를 나타내었던 주가지수는 2012년 1분기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점차 장기적인 상승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2012년 3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베트남 2대 증시의 주가지수인 VN-Index와 HNX-Index는 전년 말에 비해 각각 25.45%와 22.91% 상승하였다. 하지만 베트남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베트남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계 펀드의 베트남 내 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상장주식의 약 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국인의 투자 동향에 따라 베트남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우려를 갖고 있다 (외교통상부, 2011). 아울러 두 개의 증권거래소가 분명하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보험시장

1) 보험시장의 발전

베트남 보험시장은 1964년 설립된 국영 베트남보험회사(BaoViet)가 독점적으로 지배하여왔으나 1993년 신규 보험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경쟁적 보험시장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³⁵⁾ (박대근 외,2002). 1996년부터

34) 베트남 증시도 미국 증시 등과 높은 동조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정현·김동희 (2006) 등의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증시는 한국 증권시장과도 비교적 높은 동조현상을 나타내는 데 이는 두 증시 모두 미국 증시와 높은 동조현상을 나타내는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35) 종전에는 국영보험회사인 BaoViet만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1994년 BaoMinh가 설립되면서

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보험시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합작투자, 지점 및 대표사무소의 설치 등 방법으로 외국계 보험자본의 베트남 보험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 국내자본과의 합작투자 없이 100% 외국계 자본만으로 보험업 진출이 가능한 국가이다.³⁶⁾에컨대 도쿄해상(49%)과 Baoviet(51%)가 합작한 베트남 국제보험사(Vietnam International Assurance Company:VIA)와 베트남 연합보험사(United Insurance Company of Vietnam:UCC)가 설립되고 ManuLife(캐나다),Prudential(영국),AIG(미국)등 외국계 보험자본이 베트남에 직접 진출하였다.2007년 베트남의 WTO가입으로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100% 외국계 보험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2000년에 제정된 보험업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베트남 보험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보험시장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2) 보험시장의 현황 및 구조

(1)비생명보험시장

비생명보험에는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재산보험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 비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동차보험으로서 수입보험료의 31%를 차지했다.³⁷⁾2008년 50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등록대수가 2011년에 3년 만에 두 배인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베트남 자동차보

베트남에도 보험시장의 경쟁체제가 시작되었다.

36) 이 내용은 대한금융신문 2012년 6월 19일자 기사에서 인용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대한생명,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삼성생명, 현대해상, 서울보증보험 등 6개 보험사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 대한생명은 2011년에 베트남에 단독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삼성화재는 이미 2002년 국영재보험사인 비나리(VinaRe)와 50대 50으로 합작하여 '삼성비나보험'을 설립하였다. LIG손해보험은 하노이와 호치민에 각각 대표사무소를 갖고 있는데 현지법인 전환을 추진중이다. 서울보증은 2007년에 하노이에, 현대해상은 1997년에 호치민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37) AssociationofVietnameseInsurances자료와 A.M.BestCorporation(www.ambest.com)의 자료를 간접 인용하였다.

험 시장은 앞으로도 비약적 성장을 보일 것이 기대되고 있다. 비생명보험 분야의 주요 보험회사로는 BaoViet, PVI, BaoMinh, PJICO등이 있다. 위 4대 보험회사의 비생명보험 분야 시장점유율은 66%였으며 최대 보험회사인 Bao Viet의 시장점유율은 24.6%였는데 BaoViet는 베트남 내에서 비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도 영위하고 있는 유일한 보험회사이다.

비생명보험시장의 보험료 수입 중 국내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0.2%로 외국계 보험사의 비중 9.8%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국내보험사의 연평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10%대 후반인데 반해 외국계 보험사의 연평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50%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PVI를 제외한 대부분의 베트남 국내 비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생명보험시장

베트남의 생명보험시장은 공급 측면에서 비생명보험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다. 2010년 말 현재 12개의 회사만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시장이 비생명보험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2010년 88.3백만 명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소득 증대로 보험에 관심 있는 중산층의 비중이 커지면서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생명보험분야의 주요 보험회사로는 Bao Viet, Prudential, Manulife, AIA, Dai-ichiLife, ACE Life, Prevoir이 있다. 비생명보험 분야와는 달리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며 사실상 주요 생명보험회사에 유일한 베트남 자본은 BaoViet뿐이다. 이런 이유는 2007년부터 생명보험회사의 법정자본금을 6천억 동으로 높게 규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BaoViet(39.0%), Prudential(29.2%) 및 Manulife(10.6%) 등 3대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8.7%에 달할 정도로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과점화되어 있다.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은 저축성과 보장성을 합한 양로보험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전망이 밝은 보험 분야는 변액보험 판매이다. 보험판매는 대부분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회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와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채널 판매는 부진한 실정이다.

제3절 베트남 금융규제 환경

1.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세제

1) 외국인 투자 및 규제 정책

(1)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투자법 및 기업법, 그리고 그 하위에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내, 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구 투자법을 2005년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발효하였다. 투자법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 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2) 개정 투자법 주요 내용

국회는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기업법 등 18개의 법률,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 형식, 투자 분야, 투자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직접 투자 활동, 해외 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베트남 투자 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정의, 금지분야와 업종의 명확화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이다. 기업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거래에서 법인 인감 등록 절차 완화, 사업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일부터이며, 초기 시행 당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시행령 등 주요 하위 법령이 발표되어 안정화된 상태이다.

① 외국인 투자법인 정의 명확화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개인,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 중 외국인의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과 이들 기업들이 향후 51% 이상 투자한 기업 역시 외국 투자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구 투자법상의 투자허가서(IC)에서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를 발급받게 된다.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ERC와 I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 경우는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하게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② 투자금지분야 축소 및 조건부투자분야 정의

개정 투자법에서는 이전에 금지되었던 51개의 사업 분야에 비해 단 6개의 사업 분야(6조 마취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 거래만이 금지되었으며, 조건부 투자 분야의 경우는 267개 업종이 규정(7조 마사지서비스, 보안서비스, 경매, 회계서비스, 보세창고서비스, 보안서비스, 보험서비스, 재보험서비스, 프랜차이즈서비스,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인쇄서비스 등)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가 보호와 보안을 위한 세이프가드, 사회 질서와 안전, 사회 윤리와 공공 위생을 위한 조건부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에 근거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동안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사업 활동이 한 가지 법령상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투자법 개정안에는 모두 명기되었다. 개정법의 애초 취지에 의하면 조건부 허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가투자포털 등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여야 하나,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아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정의, 금지분야와 업종의 명확화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이다. 기업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거래에서 법인 인감 등록 절차 완화, 사업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일부터이며, 초기 시행 당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2016년 상

반기 기준으로 시행령 등 주요 하위 법령이 발표되어 안정화 된 상태이다.

③ 투자 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 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사 산업 및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 등이 그 대상인데 금융 및 은행 업무는 조건부 투자분야이다.

<표 10> 투자 유치 분야

구분	내용
금지투자분야	베트남의 국방, 국가안전 및 공익에 손해를 끼치는 투자사업 베트남의 역사문화유산 및 습관, 전통을 망가뜨리는 투자사업 국민의 건강, 베트남의 생태환경을 망가뜨리는 투자사업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
조건부 투자분야	국방, 국가안전, 치안 및 사회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 금융, 은행업무(베트남 금융 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분야 문화, 정보, 신문, 출판사업 오락사업 부동산 사업 천연자원관련사업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교육훈련사업 특별법에 해당되는 그 외의 분야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호치민 지부

WTO 가맹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개방되었다. 베트남은 2007년 1월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까지 규제 분야였던 금융·상

업·운수 등의 서비스 분야 대부분이 가입 후 5년 이내에 개방하는 것으로 되었다.

금융 및 은행업무의 시장개방 내용은 <표 11> 참고한다.

<표 11> WTO 가입 후 금융 및 은행업무의 투자개방 일정

대상 분야 및 업종	시장개방내용(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 3)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 외국인 신용기관의 상업적 주재는 다음의 형태로 설립이 허용됨. - 외국 상업 은행: 대표 사무소, 외국 상업 은행의 지점, 외국 자본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 상업 은행, 합작 금융 리스 회사, 100% 외국인 투자금융 리스회사, 합작 금융 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금융 회사
여수신업무 대출업무 금융리스 송금 보증업무 머니브로킹 자산관리	- 2007년 4월 1일부터 100% 외국 투자 은행 설립 허용 - 외국 금융 회사: 대표사무소, 합작금융회사, 100% 외국 투자 금융회사, 합작금융리스 회사, 100% 외국단독 투자 금융 리스회사 - 외국 금융 리스회사: 대표사무소, 합작 금융 리스회사, 100% 외국 단독투자 금융리스회사
금융자산 청산 서비스	- WTO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은행 지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하기 비율로 제한할 수 있음. - 2007년 1월 1일: 납입 자본금의 650% - 2008년 1월 1일: 납입 자본금의 800% - 2009년 1월 1일: 납입 자본금의 900% - 2010년 1월 1일: 1,000% - 2011년 1월 1일: 가 완전한 내국민 대우
금융정보제공 금융관련 자문서비스	- 주식 매입 비율 제한: 베트남 정부는 외국 신용기관의 베트남 국영은행 인수 주식보유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의 베트남 합작 상업은행 주식 보유 비율은

	<p>정관 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은행 지점 영업: 외국 은행의 지점은 지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거래를 허가하지 않음. (ATM 단말기 의미) - WTO 가입 즉시 외국신용기관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p>증권 주식매매 주식발행 자산포트폴리오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 직후 외국증권 서비스사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투자지분이 49%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베트남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WTO 가입 5년 후부터 100% 외국증권회사 설립을 허용 - WTO 가입 5년 후부터 외국증권 회사도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 서비스와 기타 주식 연관 서비스 업무를 허용
<p>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차보험 중 생명보험 (건강 보험제외) 및 비생명 보험 서비스 재보험/보험 중개업 보험보조업무 서비스 (보험대리점 서비스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건설 및 설치에 관련 보험, 석유, 가스프로젝트 보험, 공공의 안전 및 환경 훼손위험이 큰 건설 프로젝트 보험 분야 영업은 금지됨. - 2008년 1월 1일부터 상기 부문 영업 제한은 해제되었음. - WTO 가입 5년 후부터 권고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보험 회사의 비생명보험 지점 개설이 허용될 수 있음.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호치민 지부

베트남은 WTO 가입일정에 따라 외국기업의 주요 서비스업 투자 개방일정을 내놓았으며, 이로 인해, 무역, 유통업, 건설업 등 외국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은 조건부투자에 포함된다. 이에 서비스 분야 외국투자는 지역의 관할기관의 서면동의를 필요하며,

100% 투자 승인허가라 보기 어렵다.

진출형태별 절차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일)
1	설립요건	최소 1명이상 필요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자본금 결정 (최소 자본금 규정없음)	자본금 예치 필요 없음		
2	임대차계약		가계약 체결		
3	구비서류	투자허가신청서	DPI허가신청 양식	대행업체(법무법인)	15
		합작투자계획서(2부)	합작투자의 경우		
		창립주주명부(2부)	주식회사 경우		
		창립사원명부(2부)	유한회사 경우		
		설립할 회사정관 (원본 2부)			
		사업타당성 조사서 (원본2부)	투자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가계약서(원본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2부)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2부)			
		재정능력확약서 (2부)	법인:2년간 재무제표 개인:은행잔고 증명 첨부		
		본사 정관 (사본2부)	각 지방정부 별로 요구 조건 다름		
위임장(원본1부)					
대표자 여권 (사본1부-사진 부위)					

		대행 위임장 (원본1부)			
4	허가서 신청	해당 구비서류 일체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15
5	허가서 발급				
6	기업등록				3
7	인감등록				10
8	구좌개설			은행	
9	임대차 본계약		본계약 체결		
외국으로 발송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필요					
구비서류 각 2부씩 영문번역.공증>>영사확인>>베트남어 번역. 공증 및 대사 확인					

(2) 지사설립절차(지점 및 대표사무소)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일)
1	설립요건	본사 최소 5년간 운 영	대표사무소 :본사 최소 1년운영	산업 무역 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잔여기간 최소 3년	잔여기간 최소 1년		
2	임대차 가계약	사무실 임대 가계약 체결	가계약 체결		
3	구비서류	지사 및 대표사무소 허가 신청서			10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공증&영사관 확인 필			

		직전 회계연도 본사의 회계 감사자료 혹은 재무제표 대표사무소장 될 분의 여권 사본 공증 &영사관 확인필 대표사무소 주소가 될 사무실 임대계약 서 사본			
4	허가서 신청	해당 구비서류 제출	대표사무소의 경우 관 할지역 산업무역지국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신청	산업무역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15
5	허가서 발급		자사:업무일15일 이내 발급		
			대표사무소:업무일 15 일 이내 발급		
6	후속조치	지사 및 대표사무소 허가서 발급 후 수 속	인감 등록, 세무 번호 등록, 계좌 개설, 인사 등록 등 무역국 안내를 받아 수속		5
7	임대차 본계약	사무실 정식계약체 결			
외국으로 발송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외교통상부 영사확인필요					
구비서류 각2부씩 영문번역.공증>>영사확인>>베트남어 번역. 공증 및 대사확인					

(3) 투자 방식

① 현지법인

베트남 기업법의 회사 형태 중 주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지점

법인은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이며, 본사와는 다만 업무적 협력 관계와 TOP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게 되는 형태이고, 지점은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점을 마련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영업 활동(특히 판매)을 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하게 되어, 현지 통제가 용이하며, 자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 파견됨으로써 업무 진행상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줄어들고,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주는 것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④ 대표사무소/프로젝트 오피스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회사의 영업활동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락 사무소 개념으로 단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사와 현지법인의 차이점은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점의 경우는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고 현지법인의 경우는 현지법인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다.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지만 지점의 경우는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있다. 현지 금융에서는 현지법인은 자유롭게 현지 금융이나 투자등에 대한 것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을 할 수 없다. 현지법인으로 진출할 경우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이익 시기를 본사와 조율하여 절세방법으로 활용 가능 하다.

외국회사의 지점은 대체로 설립이 자유롭고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외국

투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본 송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지점은 대회 홍보에 있어 외국회사로 한시적 인상을 줄 수 있고 영업활동 및 오더 수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점의 경우 세무 감사 시 감사의 범위가 한국 본사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어 회사기밀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법규상으로 지사허가에 대한 부분을 법규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사 설립 허가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며, 금융기관에 한하여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4) 투자 진출 형태

먼저, 법률상 구분으로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로 나눌수 있는데 주식회사를 먼저 살펴보면 주식회사란, 3인 이상의 발기인(초기 투자자)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는 것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를 필수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후 상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관련(특히 재무)한 사안들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다.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 51%(특별한 경우 65%)를 기준으로 한다. 2015. 7. 1. 이전 구기업법 하에서 의결정족수는 각 65%, 75%였으나 완화되었다.

①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가 있다. 통상 합작회사라 하면 베트남인과 외국인 2인 이상으로 설립된 회사를 지칭한다. 합작회사는 기업형태에 있어서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며 투자형태로는 내외국인 합작투자회사에 해당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다. 다만,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 설립 가능한 회사로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지인들끼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유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내부운영규칙이나 의사 결정기관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되어 있다. 다만 최고의결기관은 항상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어야 하며 정관자본의 65% 이상 출석 및 출석 정관 자본의 65% 또는 75%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데 과반수 확보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과거에 설립된 49%: 51% 합작법인 또는 65%이하 지분소유로는 완전한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 한편 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가 있고 그 절차가 쉽지 않다. 즉 지분 양도시 기존 사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매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존 사원 우선 인수권 제도가 있다.

또한 기존 사원의 우선인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관에 기존 사원에 제시한 조건 (양도금액 등)보다 좋은 조건으로 타에 매각할 수 없도록 정하기도 한다.

유한 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는 유한책임회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도 소규모 회사의 경우 통상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고 있고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편하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사원으로도 가능하며 (1인 또는 2~50인 이하) 1인 사원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어 사원 구성의 폐쇄성이 특징이다(지분 양도 시, 기존 사원에게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어 일부 사원이 지분을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부인 참여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기존 사원의 우선인수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관에, 기존 사원에 제시한 매도가격 등의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타에 매각할 수 없도록 미리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 매각하기 위해 기존사원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종전 기업법에서는 투자자가 자본금을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하면 되었으나, 개정 기업법에서는 자본금 납입 기간은 90일로 단축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반면 주식회사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창립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3년간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자본금을 회사 설립일로부터 9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시장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

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시에 의결 정족수가 한국과 다르다. 정관자본의 65%의 출석 및 출석 정관자본의 65% 또는 75%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51%만으로는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다. 오히려 나머지 49%를 소유한 베트남인이 회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100%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며 외부투자자가 개입되는 경우에도 25% 또는 35% 미만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

상호,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 (있을 경우), 사업분야 및 업종 (Business Lines), 회사의 정관자본금 (Charter Capital): 기업의 정관에 명기된 회사의 사원이 출자하기로 합의한 자본총액, 각 사원의 출자자본, 기업 소유주의 법적 대리인 또는 회사소유주의 성명, 서명날인,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설립될 회사의 정관 초안, 상호,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주소, 사업분야 및 업종, 정관자본금, 정관자본금의 증감자 방식 (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감자가 안됨),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기본 사항,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그 가치, 사원의 권리와 의무, 관리조직 구조, 법적 대리인, 회사의 결의안 통과 방식, 내부분쟁 해결원칙, 경영자와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의 수당, 급여, 상여금 확정 근거 및 방식, 사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과세, 체세 이후 이윤의 분배와 경영상 손실 처리에 대한 원칙, 해산의 경우, 해산절차, 회사재산청산절차, 회사 정관의 개정 보완 방식, 모든 사원과 기업 소유주, 그리고 법적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날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원과 주주 합의 사항, 창립사원의 명단: 최초 정관을 수립, 승인, 서명 날인한 자본 출자자, 회사 주소지와 관련된 계약서 (토지 또는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임대계약서는 허가 신청 시 필수 서류이다. 다만 본 계약 말고 MOU 같은 가계약서로 신청해도 된다. 즉 본사 명이나 법인장 내정자 명의로 가계약한 후 허가가 취득 후에 본 계약을 한다. 주소지는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한다. 외국 투자법인의 경우 주택과 사무실을 겸하는 경우 허가를 내어주지 않기도 하다 (예: 아파트). 가계약 주소지와 본 계약 주소지는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를 대표할 사람 (Legal Representative)의 여권사본 (베트남인의 경우 주민등록 사본), 관련법상 필요한 경우 법정자본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사본, 창립 사원이 법인일 경우, 한국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한국본사의 2년간 재무제표, 한국 본사의 대표이사의 여권사본, 설립사무 대리위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임장, 대리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창립 사원이 개인인 경우, 여권사본, 준비된 서류는 영어 2부, 베트남어 2부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서류제출일 3개월 이전). 영어로 번역, 공증받은 서류는 외교통상부 영사 확인과에서 확인도장을 받고,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받은 서류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사는 베트남 내 소규모 영세기업의 형태로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투자형식(주체)별 구분으로는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 (BCC), 인수합병(M&A)를 통한 투자진출로 나눌 수 있는데 단독투자부터 하나씩 나열해 보겠다.

㉠ 단독투자

기업법 제7조에 의거 투자자의 100% 자본에 의한 경제단체 설립이 가능하다.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유한책임 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회사 등을 설립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베트남에 설립된 기존의 100% 외국투자기업은 외국 투자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100% 외국 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00% 외국투자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른 법인격이주어지며, 투자허가서(IC)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다.

㉡ 합작투자

한국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복합형으로 베트남 내국인 특히 가족, 친지, 친구 등과 같은 지인들끼리의 합작형태이다. 기업법 제8조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에 의한 합작 경제단체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투자자는 국내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

사, 합작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 본 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와 합작하여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신규 경제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합작 형태에 따른 기업은 베트남 법에 따른 법인격이 주어진다. 또한, 투자 허가서(IC)를 발급 받은 날부터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활동할 수 있다.

㉔ 경영협력계약 (BCC)

제9조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이다. 경영협력계약이란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인 또는 그 이상의 외국인투자자와 1인 또는 그 이상의 국내투자자 (이하 계약 당사자라 함)간 체결된 계약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책임과 경영 결과의 분배를 규정한다.

생산물의 분배계약 형식에 따른 채광, 석유 및 가스 탐사, 그리고 기타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경영협력계약은 투자 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되며. 투자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투자자간 체결된 경영협력 계약은 경제 계약에 관한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투자 및 경영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조정 위원회 설립을 합의할 권리가 있다. 조정위원회의 기능, 임무, 권한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며, 조정위원회는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의 의결기관은 아니다. 외국 투자자 측은 경영협력계약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경영사무실을 베트남에 설치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 측 경영사무실은 별도의 직인을 갖고, 계좌를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투자승인 확인서와 경영협력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진출 선호형태로는 투자규모가 작을 경우 경영 및 관리가 간편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유리하며 다수의 파트너가 공동 출자할 경우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합당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3인 이상 주주가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대규모사업에 적합하며 초기 진출 시 주식회사형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개인사업자 또는 합작회사(베트남 지인간의 합명회사)는 외국인에 개방되어 있지 않다(진출 불가 형태).

㉕ 인수합병(M&A)를 통한 투자진출

M&A란 Merger & Acquisition의 약자로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에서는 Merger란 기업의 모든 자산, 권리, 부채 등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Acquisition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넘겨받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M&A를 규제하는 단일 법규는 없으며, 기업법(Law on Enterprise), 투자법 (Law on Investment), 증권법 (Law on Securities), 경쟁법 (Law on Competition), 그리고 각 산업특별법에서 M&A와 관련된 조항이 산재해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WTO 양허안 상의 개방일정도 확인하여야 한다.(No. 102/2010/ ND-CP, Decree Detail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Enterprises, Article 13).

투자허가 가능 사업 분야인지 여부는 세 가지로서 ①베트남에서 M&A를 할 경우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은 일단 인수하려는 기업의 업종에 대한 규제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②인수자가 외국투자자인 경우 M&A는 외국인투자자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법 상 직접투자의 한 형태로 규정됨. 따라서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등록(registration)이나 심사(evaluation)를 거쳐야 함, ③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심사기일이 요구되며, 또한 인허가여부도 심사당국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됨 (No. 108/2006/ND-CP, Decree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Investment Law). 개인 기업(Private)은 외국인의 경우 불가하고 있다.

(5)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① 일반론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상 사실행위로서, 해산의 사유는 각 회사마다 다르나, 베트남 기업법은 일반적인 사유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투자법은 세금을 납부한 뒤의 영업 이익, 기술료 및 서비스료, 지적재산권의 대가, 대출의 원리금, 청산 후의 잔여재산 및 기타 금전 또는 재산의 해외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형태로 투자된 자금은 청산 전에 조기에 회수될 수 없다.

청산 이후에는 잔여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데 청산은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에 명시된 사업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투자 허가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산

기업은 ㉠회사정관상에 기재된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주,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또는 기업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베트남 기업법에 규정된 최소 사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채권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보장하였을 시 해산이 가능하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산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계당국이 직권으로 해산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업해산결정서가 통과된 경우 결정서에는 ㉤기업의 상호와 본사 주소, ㉥해산 이유, ㉦기업의 계약청산, 채무변제기간 및 절차(계약 청산 및 채무변제기간은 기업해산 결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처리방안,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청산을 하는 경우

베트남 투자법 상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업기간은 5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기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고 투자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허가서 (Investment Certificate) 상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업은 자동적으로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아직 외국투자 초기 단계이므로 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투자자는 사업기간 중이라도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청산 결정은 기업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소유주의 결정, 수입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결정, 또는 2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㉔주식회사의 주주총회, ㉕개인 기업이나 동업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전원동의 등을 통하여 기업은 청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세금 및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각 최소 2인 혹은 3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가 유지되어야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 베트남 기업법 157조에 의하면 6개월간 연속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법령상 요구하는 최소 투자자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청산사항으로 규정하는 바, 2인 유한책임회사에서 1인 사원이 다른 사원의 지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3인 주식회사에서 2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는 기업형태로 법인격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베트남 투자법 상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신청 시 제출한 투자 스케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서 (IC)를 회수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주식 양수도나 자산 양수도를 통하여 기업이 인수 합병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피 인수기업은 자동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④ 주의점

베트남에서 기업의 청산은 매우 까다롭고 실무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관련 공무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고 대관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청산은 본국으로의 자본금 회수와 직결되므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원만한 청산을 이해서는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에서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 양도, 축소 또는 유지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다.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관세 감면,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해외인력 비자지원, 고용보조금지원, 자금 융자, 무역보험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R&D지원 등 혜택이 있다.

⑥ KOTRA U턴기업 지원센터

KOTRA 본사의 'U턴기업 지원센터' 및 'U턴기업 지원데스크(해외무역관)'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원스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U턴 의향 기업 종합상담, U턴 기업 지원제도 홍보(국내외 설명회 개최, 해외조사단 파견 등), 지원대상 U턴 기업 선정 신청, 접수 및 심사, 진출기업 구조

조정 컨설팅 지원, U턴 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 관련 제도 조사 및 자료 발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세제 규제

1) 조세제도

(1) 최근 동향

2009년 1월1일 시행 세법은 주요 과세 대상인 외국인 투자 기업 임직원의 소득 규모를 감안해 월 8,000만동을 최고로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과세 등급을 세분화하고, 기존 40%의 최고 세율을 35%로 인하했다.

최근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CEO 및 임직원의 경우, 8000만 동(4,500달러 수준)을 상회하므로 대부분 최대 세율 35%를 적용 받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자본 거래, 파생 금융 상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및 매입 부가세 수정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베트남의 법인세 인하안이 2013년 6월 19일 의회를 통과하면서 2014년부터 법인세율은 2014년 1월부터 22%로, 2015년 22%, 2016년부터 20%로 인하된다. 연간 수익 200억동(약 95만달러) 미만 기업은 2014년부터 20%의 법인세율(2016년부터 17%) 적용된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Business Income Tax), 원천징수세 (Various Withholding Taxe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수입관세 (Import Duties),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사회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Social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Job-loss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Vietnamese Employees) 일부 특수 업종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세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재산세 (Property Taxes), 수출관세 (Export Duties),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2) 법인세

① 법인세율

투자 인센티브는 주로 면세와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혹은 토지 사용료 면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세금 관련 문제는 투자 지역, 투자 종목 그리고 종업원 고용 효과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 및 세법에 정해져 있다. 토지 사용료 면제의 경우는 기간산업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에 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사용료 면제 대상 지역은 낙후 지역으로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물류비 등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 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도 베트남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다.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또한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③ 법인세율 하향 및 법인세 인센티브 축소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16년 1월 1일 부터 20%이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본법인세율이 아닌 32~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은 28~50%). 이전 연도 소득금액이 200억 동 미만일 17%가 적용된다.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에 위치하는 경우, 첨단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특별히 중요한 인프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10% 우대세율이 15년 동안 적용된다. (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9년 50% 감면 포함) 신설기업으로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에 투자하는 경우 10% 우대세율 적용된다. (과세소득 발생 후 4년 면제, 9년 50% 감면 포함) 신설기업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17% 우대세율이 10년 동안 적용된다(과세소득 발생 후 2년 면제, 4년 50% 감면 포함). 우대되는 산업에 대한 20% 세율 적용이 사라졌고(지역에 대한 적용만 명시됨), 우대 세율 중 15%가 사라지는 등 범위가 축소되었다.

위 법인세 우대세율의 적용기간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은 추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공장 증설 등에 법인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면제 및 감면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은 과세소득이 발생한 시점(즉,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이는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회사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면제 및 감면기간은 매출이 발생한지 4차년도부터 자동적으로 개시된다. 이러한 ‘3-year rule’은 신 법인세법에 새로 등장한 조항이지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된다. (2008년까지 설립된 회사들 중 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적용되는 회사로 아직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개시되는 시점은 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며(즉, 3년), 계산 시점은 신 법인세법이 발효된 2009년 1월 1일부터임.)

위 법인세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회사의 main business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 ㉠ 지분,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의 양도로부터 얻은 소득
- ㉡ 채무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예를 들면 예금이자, 외환거래 등
- ㉢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장부상 제각처리 했으나, 향후 다시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 및 채무자가 불분명해 지급하지 않은 채무로부터 얻은 소득 등

(4)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신 법인세법은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rule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 ㉡ 하자 없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들이 갖춰져 있을 것
- ㉢ 법에 나열된 공제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기술개발준비금(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nd) 신설

신 법인세법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
- ㉡ 연간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위한 준 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 이는 베트남 내의 과학 및 기술개발활동에 투자되어야 함.
- ㉣ 만약 적립 후 5년 이내의 총 투자금액이 적립금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총 투자 금액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사용금액은 제외됨), 총 미사용 금액으로 인해 미납된 법인세뿐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 또한 납부해야 함.

(3)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① 외환 관리 개황

베트남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환 관리법을 제정하여 외환을 관리 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환 관리의 주요 목적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계획 수립 시 국가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외자 자금을 투입, 국가에 필요한 물자 수입을 보장하며 국내 수급 상황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및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외화 자금의 수입원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 수지 안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외화 통제를 통해 외화 낭비를 막고

국내의 화폐 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외환은 모두 국가가 독점하여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이 관리하고 있다. 집중된 외화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국가의 경제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은 동 위원회에 수입 계획서를 갖추어 외화 할당 신청을 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휴대 반입하는 외화, 귀금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금액, 물건에 한해서만 재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제반 외환 관리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투자기업은 외국환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동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 대체재의 생산, 사회 간접자본 시설 건설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과 다른 외국 투자 기업은 외화 수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즉 외화 수취 금액이 이윤, 배당금 등의 송금을 포함한 외화 지출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외환 거래는 정해진 외환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①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2016년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11.6-12.9% 인상률을 보이며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1지역의 최저 임금은 350만 동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1지역 350만 동, 2지역 310만 동, 3지역 270만 동, 4지역 240만 동이다.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질 시장 임금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급작스런 인상은 외투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0.7%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12.4% 인상률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국 투자 기업의 대부분이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투자 기업의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중소 투자 기업의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② 높은 소득세율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183일 이상 베트남 체류 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개인 소득세는 5%에서 35%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월 소득이 최고 기준인 8천만 동 이상인 경우가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베트남내의 원천소득 및 국외 원천소득도 모두 합하여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 된다.

(5) 기타

이 밖에도 근로자들의 문화적 차이, 부패가 만연한 관공서 관행 등이 투자 진출 시 애로 사항으로 작용한다.

제 4 장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

제 1 절 우리금융지주

1. 회사 개요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 4월 세워진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나로종합금융 등 5개 금융회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로 하고 지주회사로 우리금융지주를 세웠다.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소유했다.

같은 해 9월 하나로종합금융이 우리종합금융으로 사명을 바꿨고,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이 새로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11월 우리금융자산관리도 자회사로 들어왔다.

그 해 12월 평화은행은 은행 부문과 카드 부문으로 회사를 분할했다. 은행 부문은 한빛은행과 합병했고 카드부문은 우리신용카드(주)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해 카드 영업을 전담했다. 이로써 평화은행은 1992년 출범 이후 8년 만에 사라졌다.

우리금융지주는 2002년 3월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같은 해 5월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 해 6월 우리금융지주는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때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주식은 모두 상장 폐지됐다.

같은 해 7월 우리증권이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 해 9월 우리금융자산관리는 우리에프앤아이로 이름을 바꿨다.

2003년 7월 우리은행은 우리종합금융을 흡수 합병했다. 이 해 9월 우리금융지주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2004년 3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합병했다. 같은 해 12월 우리금융지주는 LG투자증권을 인수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듬해 3월 우리증권과 LG투자증권을

통합하고 사명을 우리투자증권(주)으로 정했다.

같은 해 5월 우리투자신탁운용과 LG투자신탁운용이 합병해 우리자산운용이 출범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008년 4월 LIG생명보험을 인수하고 사명을 우리아비바 생명보험으로 바꿨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10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고 주식 매각을 추진했다. 2014년 11월 우리은행에 흡수 합병되었다.

2. 기업 연혁

연 도	내 용
1899	대한천일은행 창립(1950.04.24 한국상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1909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은행 본점 '광통관' 신축
1915	경성부금고(현 서울시금고) 업무 취득
1932	조선신탁주식회사 창립(1960.01.01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1956	증권거래소 제1호로 주식 상장
1968	시중은행 최초 해외지점 설치(동경지점)
1999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에 따라 한빛은행으로 상호 변경
2001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2002	'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 및 CI 변경
2003	우리종합금융 흡수합병
2006	홍콩우리투자은행 공식 출범
2007	중국현지법인 '중국우리은행유한공사' 설립
2008	러시아현지법인 '러시아우리은행' 설립
2008	전환우선주 70,000,000주 발행(액면가 5,000원, 10,000원)
2009	자본 확충을 위한 보통주 60,000,000주 발행
2009	아시아 금융문화 대상 '사회공헌 최우수상' 수상
2010	우리은행, 'IT서비스 전부문 ISO 27001 인증' 획득
2013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
2014	국내최초 바젤III 기준 충족 외화 후순위채권 10억불 발행 성공
2015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Bank Woori Saudara) 공식 출범
	국내 첫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뱅크(WiBee Bank)' 출범
2016	5억불 글로벌 선순위 채권 발행
	방글라데시 전역 직불카드 서비스 개시
	위비뱅크, 인도네시아·베트남·브라질 진출
	국내은행 최초 이란 사무소 오픈(테헤란)
	모바일 기반 통합멤버십 '위비멤버스' 출범
	베트남 현지법인 신설 본인가 획득
	해외 네트워크 250개 달성
2017	금융권 최초 '원터치알림 외국어서비스' 출시

	국내은행 최초 英 World Finance誌 선정
	폴란드 카토비체 지역 국내 첫 사무소 오픈
	베트남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 신용카드 출시
	글로벌 네트워크 300개 돌파

3. 베트남 시장진출 현황

1) 베트남 시장 진출 배경

베트남 내 한국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베트남 FTA 발효 등으로 무역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금융수요 역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은행 산업은 상위 국영 상업은행 중심의 편중된 구조로 향후 소매 금융의 성장 여지가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기존 해외지점 형태의 업무 및 영업 한계에서 벗어나 현지 리테일 영업 등을 강화하고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7년 3월 한화생명베트남과 방카슈랑스 업무 제휴를 개시하였고 글로벌 위비뱅크를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17년 5월 베트남우체국보험과 손해보험부문 방카슈랑스 업무제휴 완료하였고 '17년 9월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 영업중이다.

이에 따른 전망은 베트남 보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FP를 체계적으로 교육으로 양성하고 있어 기업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베트남내 신용카드 보유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신용카드 발급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은행 간 계좌이체, 폰 뱅킹, 어플 사용 빈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3) 영업의 현황

(1) 영업 개황

2017년 1월 3일 법인 본점 개점 후, 1월 23일 하노이지점과 호치민지점이 영업 개시하였으며 舊 하노이지점과 호치민지점으로부터 고객 및 자산, 부채를 양수 중입니다. 6월 30일 박닌지점 추가 개설하여 영업중이다.

(2) 영업의 종류

베트남우리은행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 수신, 여신, 외환, 수출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업무 제휴를 통한 영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한 '17년 9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여 영업 중이다.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업무명)	주요내용
여신	일반대, 시설대, 신용대 및 지급보증 등 대추상품
수신	일반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상품
유가증권	베트남 국채 매입 등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현금서비스 등
국제업무	수출입, 환전, 해외송금, 신용장 등

(3)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단위 : 천달러%)

항목	2017년		2016년		2015년		
	기중평잔	비중	기중평잔	비중	기중평잔	비중	
운용	자금(콜론)	238,742	41.7	-	0.0	-	-
	유가증권	15,185	2.7	-	0.0	-	-
	대출	188,263	32.9	-	0.0	-	-
	기타	130,650	22.8	131,753	100.0	-	-
조달	예수금	239,477	51.2	-	0.0	-	-
	차입금	20,243	3.5	-	0.0	-	-
	자본금	131,439	22.9	131,816	100.0	-	-
	기타	127,681	22.3	-64	0.0	-	-
총자산	572,840	100.0	131,753	100.0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 실적

베트남우리은행은 2017년 말 기준 USD 16,268 천불의 영업수익을 실현하였으며 USD 3,038 천불의 세전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총자산 USD 724.1 백만 불, 자기자본 USD 134.0 백만 불을 보유하고 있다.

①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천달러)

항목	2017년	2016년	2015년
총자산	724,060	131,753	-
총대출금	244,691	-	-
총예수금	365,262	-	-
영업수익	16,268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영업설비 등의 현황

(단위 : 개)

지역	지점	출장소	사무소	합계
하노이	1	-	-	1
호치민	1	-	-	1
박닌	1	-	-	1
계	3	-	-	3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

(단위 : %)

구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비고
	BIS기준 자기 자본 비율	BIS기준 기본 자본 비율	단순자기 자본 비율	손실위험도가 중 여신 비율	고정여신 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률	연체대출 채권 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이익경비율	외화유동성비율	
베트남 우리은행	22.51	22.35	16.94	0.35	0.31	153.07	0.34	0.38	1.97	68.26	127.07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시사점

1) 인터넷 활용방안

(1) 인터넷을 통한 고객 서비스방안

<표 12>베트남인구 대비 디지털 사용인구(2016년)

(단위 : 백만)

구분	베트남인구	인터넷이용 인구	SNS사용 인구	휴대전화 사용인구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사용인구
인원	93.95	47.30	35.00	142.99	29.00

자료 : We are social, 저자 재작성

휴대폰은 이제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 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이고 그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 비율(2016년)

(단위 : %, 만명)

구분	인터넷 사용인구	총 인구대비 인터넷사용자비율	모바일 인터넷 사용 인구	총 인구대비 모바일 인터넷 사용인구
수치	4,730	50	3,970	42

자료 : We are social, 저자 재작성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인구 중 대다수가 일반 PC가 아닌 휴대전화 및 테블릿 사용자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4> 베트남 인터넷 접속 기기 비율(2016년)

(단위 : %)

구분	핸드폰	스마트폰	데스크탑	태블릿	TV
수치	93	55	46	12	2

자료 : We are social, 저자 재작성

위에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의 접속기기 비율은 핸드폰이 압도적이다. 그중 스마트폰 & 태블릿의 접속 비중의 합은 67%나 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곧 금융영업에서도 모바일 기반의 영업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상품의 구매선호 채널과 계층별 구매사용경로,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고객의 인터넷 사용용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별 접근성 측의 지표를 확인한다면 보완 채널로서의 인터넷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는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다.

(2) 인터넷을 통한 고객 충성도 제고

인터넷은 고객확보적 채널인 동시에 고객이 탈적 채널이 될 수 있는 이중성³⁸⁾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각종 금융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각 금융사의 상품, 서비스 등 모든 정보를 비교 검색하여 주는 웹사이트³⁹⁾도 있어 개인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이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고객의 폭은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보험사로서는 가망고객의 확보와 기존 고객의 이탈방지에 촉각을 세우게 되었다.⁴⁰⁾

38) 이중성은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직원나 회사로부터 직접 알아보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니즈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렴한 탐색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되었기 때문이다.

39) 정보중개자(infomediary) : 정보중개자로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기도 하고, 공개정보를 취사 선택해 특정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시대의 정보 중개자는 대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가장 중요한 접근 수단이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40) Reinheld, Frederick F . and W. Earl Sasser, Jr, "Zero Defections: Quality comes to Services,"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1990, pp.105-111.

(3) 온라인 고객의 개인화(Personalization)증가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금융사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자사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게 하여 구매로의 전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한 예로 홈페이지를 고객정보에 준하여 개인화하여 방문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는 느낌을 주거나 고객의 사주, 바이오리듬, 운세 등의 오락성 정보와 금융계좌관리 및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하고 e-mail marketing을 통해 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다시 웹사이트 방문 및 금융니즈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고객 서비스의 개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문은 고객관계관리⁴¹⁾의 일환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의 연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객의 웹사이트 방문에서 생기는 금융니즈나 가입금융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보다 즉각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객의 웹사이트 방문기록과 예상되는 금융니즈의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고객의 보험사 접촉시 즉각적인 정보제공과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고객의 정보 분석을 토대로 고객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정된 정보를 e-mail을 통해 전달한다면 보다 완성된 고객서비스의 개인화가 달성될 것이다.

(4) 고객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케팅 강화

자산관리 고객확보를 단순히 시장점유율 측면이 아닌 고객점유율⁴²⁾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금융사에 2개의 금융상품을 가지 30대 직장인 고객 K씨가 있다. 그는 전체 금융거래에서 3개의 금융사에 4개의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고객은 전체 금융상품 중 50%는 A금융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K고객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유한 금융상품이 10개로 늘었지만, 계속해서 A금융사에는 2개의 금융상품만 있고 다른 금융사에는 1개에서 각각 4개씩 증가하였다. 그러면, 이 A금융사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그

41)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의 관점에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의 효율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기업 경쟁력 및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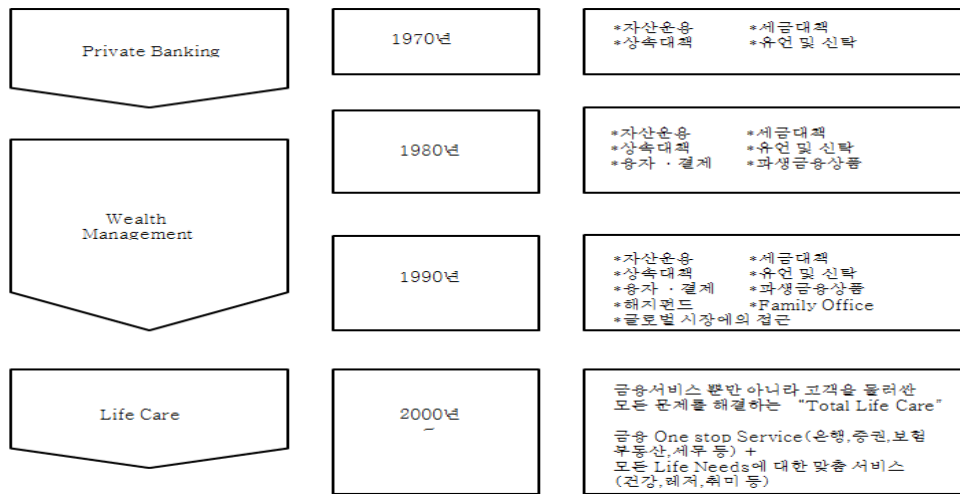
42) 한 고객이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

대로 이지만 ‘조용한 고객감소(silent attrition)’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고객의 이탈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로열고객은 일반고객에 비해 5배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자산관리서비스 특성상 고객의 평생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기에 고객의 전환장벽 될 수 있는 고객점유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FP의 전문화를 통한 고객과의 접근성 극대화

베트남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아래 <그림 2>처럼 발전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FP⁴³⁾의 전문화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2>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과정



자료 : Merrill Lynch / Gemini Consulting, "World wealth 1999", 2000. 1

43) 고객의 개인적 상황, 자산, 재무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목표달성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설계된 플랜을 실행하며 플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인 수정작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Financial Planning)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Financial Planner(FP)라고 한다.

김정동, 전유훈, "FP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관리연구, 14권 2호 2003.가을 pp.109-134

아래 <표 15> 같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을 상대로 마케팅활동을 하는 개별마케팅 내지는 고객과 관계 구축을 상품, 서비스 판매에 연결시키고 고객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관계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과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P는 마케팅 및 영업 전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표 15>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FP 전용서비스

서비스구성	투자자문	퇴직설계	세금자문	부동산자문
내용	고객의 재무목표설정 후 달성지원	연금계 획관리	소득세, 상속세 등의 절세방안제시	부동산계획 운용자문 세금자문
예상이익	유지율 증가, 교차판매기회 확대			대출상품제공
구현이익	별도 컨설팅 조직검토 또는 기존조직의 전문화			
채널역량	on/off라인의 하이브리드 채널로 구현가능			

자료: 진익,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경영보고서, 2009. 3 pp.113-116요약

제2절 미래에셋금융지주

1. 회사개요

미래에셋대우의 모체는 1970년 9월 세워진 동양증권이다. 1973년 9월 대우실업(주)이 동양증권을 인수했다. 1975년 9월 동양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1983년 10월 동양증권에서 대우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같은 해 12월 삼보증권을 흡수 합병했다. 1984년 5월 국내 최초의 민간연구소인 (주)대우경제연구소를 세웠다. 같은 해 8월 동경사무소, 9월 뉴욕사무소, 1986년 6월 런던사무소를 열었다. 1988년 2월 대우투자자문(주)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 홍콩사무소를 개설했다. 1989년 12월 헝가리 신용은행과 합작으로 MHB-Daewoo Bank를 설립했다.

1990년 1월 업계 최초로 트레이딩 룸을 설치했다. 1991년 유럽현지법인과 취리히 사무소를 개설했다. 1992년 뉴욕현지법인을 세웠다. 1993년 베트남 합작은행과 마자르 대우증권을 각각 설립했다. 1994년 인도 합작증권사 및 홍콩현지법인을 세웠다. 1995년 상하이 사무소, 싱가포르 사무소를 잇달아 개설했다. 1996년 대우 인베스트, 루마니아 합작은행을 각각 설립했다. 1997년 우즈벡 합작은행, 대우선물(주)을 세웠다. 1999년 8월 최대주주가 대우그룹에서 제일은행 외 8개사로 변경됐다. 1999년 10월 대우증권이 대우그룹 계열에서 분리되었고, 2000년 5월 최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지분율 22.76%)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 11월 국내 업계 최초로 e-KM(지식관리) 및 CRM(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1년 대우투자자문을 청산하고 동경사무소를 폐쇄했다. 2002년 7월 대우 헝가리 은행을 매각했으며, 10월에는 업계 최초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 경영인가를 획득했다. 2003년 루마니아 은행과 우즈벡대우은행을 각각 매각했다. 2006년 7월 도쿄사무소, 2007년 10월 베트남 호찌민사무소, 2008년 11월 베이징사무소를 열었다.

2009년 10월 대우증권의 최대주주가 산은금융지주(지분율 39.09%)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 산은캐피탈 · 산은자산운

용 · 한국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산은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KDB)대우증권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12년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세웠다. 2014년 12월 대우증권의 최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지분을 43%)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 1월 KDB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KDB대우증권의 주식 43%를 미래에셋증권(주)이 인수함에 따라 2016년 4월 KDB대우증권의 최대주주가 미래에셋증권으로 바뀌었다. 같은 해 5월 KDB대우증권이 회사명을 미래에셋대우(주)로 변경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투자업을 하는 회사다. 국내 영업망으로 102개 점포(1개의 영업부, 16개의 PB Class, 82개 지점, 3개의 금융스토어)를 두고 있으며, 해외 영업망으로는 9개 현지법인(홍콩(3), 뉴욕, 런던, 북경, 싱가포르, 몽골, 인도네시아), 3개 사무소(호치민, 상해, 동경) 등이 설치돼 있다.

2016년 3월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증권이며, 보유 지분은 43%다.

2. 기업 연혁

연 도	내 용
1997	국내 최초 전문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투자자문 설립
1998	국내 최초 뮤추얼펀드 박현주 1호 출시
1999	미래에셋증권 설립
2000	미래에셋 투신운용 설립
2001	국내 최초 선취형 뮤추얼펀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형’ 출시
2003	국내 최초 해외 운용법인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설립
2004	국내 최초 적립식 펀드 출시 (적립형 3억 만들기 펀드)
2005	미래에셋생명보험 출범
2006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설립
2007	미래에셋증권(베트남) 설립
2008	부동산 114 인수
2009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합자(JV) 운용회사 설립계약 체결
2010	미래에셋증권(브라질) 설립
2011	세계 1위 골프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인수
2012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합병
2013	세계 최고급 호텔 브랜드 ‘포시즌즈 호텔 시드니’ 인수
2014	미국 워싱턴DC 오피스 빌딩 1801K 인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입주)
2015	샌프란시스코 랜드마크 호텔 ‘페어몬트 샌프란시스코’ 인수
	미래에셋생명,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6	미국 아마존본사 Phase VIII 빌딩 인수

2017	미래에셋생명, PCA생명 합병 최종 승인 (금융위)
	미래에셋대우(인도) 설립
2018	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 통합 미래에셋생명 출범

3. 베트남 시장진출 현황

1) 영업개황

(1)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이머징마켓을 비롯하여 선진국 시장까지 전세계를 투자대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상품군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현물과 선물, 선도거래 등을 이용하여 리스크관리를 수행함과 동시에 Active하게 운용하고 있다.

(2) 위탁매매 업무 (Dealing in Securities, License Type1)

당 법인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홍콩/중국 주식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가에 대한 주식 위탁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리서치 업무 (Advising on Securities, License Type4)

한국 리서치센터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준 높은 리서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위탁매매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4) 기업금융관련 자문업무(Advising on Corporate Finance, License Type6)

상장, 비상장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자문 업무 및 IPO를 위한 상장 지원 업무 등 기업 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자산관리 업무(Asset Management, License Type9)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10월

Type9 라이선스를 신규 취득하였으며, 현재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소싱 능력을 갖추고 복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 법인은 파생상품 중개 영업 개시를 위해 2017년 9월 18일 Type2 (Dealing in Futures Contracts) License를 취득했으며, 홍콩선물거래소 회원권 취득을 위한 준비와 전산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TF Market Maker 사업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2017년 6월 22일 홍콩거래소로부터 정식 참가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금융중심지 중 하나인 홍콩은 중국의 대외 투자 전진기지로서 주식시장 또한 본토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로서 세계 경제의 G2로 부상한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유수 금융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상해-홍콩 간 주식시장이 연결(후강통)되었고, 2016년 12월에는 심천-홍콩간 주식시장이 연결(선강통)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해 및 선전거래소 상장 기업 투자를 위한 Gateway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채권 시장 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과 홍콩의 채권시장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채권통이 2017년 7월 3일 개통되면서 홍콩을 통한 중국시장의 개방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직전 분기 대비 2017년 4분기 기준 항셱 지수는 8.6%, H지수는 7.3% 상승하면서 전 분기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시사점

1) 해외진출 모색기-베트남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지리적 위치

베트남의 <대단결신문>은 증권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10대 재력가들의 총 재산이 무려 8억7,500만 달러(약 8,0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주가 폭등 등으로 거

액을 모으게 됐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對)베트남 투자와 부동산 개발, 국영기업의 공개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재산가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0년 한국의 도움으로 선보인 베트남의 증시는 불과 5년 만에 이머징마켓 가운데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앞선 곳으로 자리 매김했다.

이를 증명하듯 베트남 증시는 2007년 1월 한 달 동안에도 주가지수(비나인덱스)가 1,041.33으로 전달의 751.77보다 38.5%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권의 또 다른 신흥 시장인 인도와 비교할 때 10배나 높은 수치다. 중국에 비해 서도 4배나 높다. 베트남 경제수도인 호찌민(옛 사이공)과 수도인 하노이 두 곳에서 증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상장 업체 수는 2007년 2월말 기준 195개이고, 호찌민 거래소에서 전체 거래의 60%가 이뤄진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증시는 외국 투자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펀드 출시가 잇따르면서 각축전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직접투자보다는 증권사 등을 통한 간접투자과 장기투자를 권한다. 또 성장성을 고려해 투자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다고 지적한다.⁴⁴⁾

홍콩에 먼저 진입한 미래에셋은 실제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증시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직접 경쟁하기는 어렵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역량을 쌓은 경우 글로벌 회사보다 우월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 해외전문인력 확보

미래에셋이 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수한 인력 확보였다. 당시 미래에셋이 한국에서는 유명세를 타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해외에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던 능력 있는 펀드매니저들은 연봉을 더 준다 하더라도 생소한 한국 업체에 오려 하지 않았다. 특히 펀드매니저

44) 김선한 「미래에셋 글로벌 경제총서 06 아시아의 젊은 호랑이 베트남」 2007. 9 pp.41

세계에서는 연봉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운용 자산 규모다. 세미나 발표 순서를 정할 때에도 운용 자산 규모가 큰 순서대로 할 정도로 펀드매니저들에게는 운용 자산 규모는 자산의 역량을 드러내는 지표였다. 당시 미래에셋은 해외펀드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따라서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펀드매니저들은 연봉을 큰 폭으로 올려준다는 제안을 받더라도 미래에셋으로 옮기려 하지 않았다. 물론 현재 연봉의 3~4배 이상을 준다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런 장벽에 부딪친 미래에셋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역량 있는 펀드매니저를 영입하기 어렵다면 기업 분석을 전담하는 애널리스트를 영입해 펀드매니저로 키워내는 대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애널리스트는 투자 대상 기업과 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후 직접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가 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역량을 갖춘 젊은 애널리스트와 잘 교섭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를 뽑아서 펀드매니저로 활용하는 전략은 또 다른 장점이 있었다. 미래에셋은 아시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인도, 혹은 아시아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출시할 예정이지만, 아시아 지역의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도 선보인다는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성장하면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수혜를 입는 건설업체 등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 성장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의 내수 시장이 커지면 소비재 유통 금융 등 내수 산업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소비재 펀드도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어 출시 대상으로 꼽았다. 이런 섹터 펀드의 경우 여러 나라 기업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정 국가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에 비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담당하는 섹터 애널리스트는 매력적인 영입 대상이 됐다. 인프라 관련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에게 인프라 펀드 운용을 맡기고, 소비재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

트에게 소비재 펀드를 담당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섹터 펀드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 전역에 투자하는 지역(regional)펀드를 만들 경우 한 명의 펀드매니저가 운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요 업종을 커버하는 매니저들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regional 펀드 운용도 가능해진다.

미래에셋은 이를 위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에서 경쟁력 쌓은 애널리스트를 몰색해 접촉했고 어렵지 않게 이들을 영입할 수 있었다.⁴⁵⁾

3) 현지 직원 역량과 미래에셋 고유 역량의 결합

미래에셋은 법인 설립을 하면서 한국인 파견을 최소화했다. 한국인 위주로 법인이 운영될 경우 현지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간부가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은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현지 법인에 파견된 한국인들은 한국적 정서와 문화를 확산하려 하기 때문에 현지인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셋은 한국인으로 법인장과 펀드매니저 어시스턴트 등 최소한의 인력만 파견했다. 나머지는 모두 현지인을 고용했다.

4) 미래에셋증권의 후속 진출

자산운용을 먼저 출범 시킨 뒤 증권이 뒤따라가면서 추진했다. 증권사의 경우 글로벌 증권사에 비해 자기자본이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2007년 8월17일 외국계 합작 종합증권사 중에 최초로 현지 설립 예비 인가를 획득하고 베트남의 WTO가입으로 인한 개방확대정책에 따라, 합작사 형태로 베트남 증권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진출 지역은 베트남 경제도시인 호치민을 시작으로 하노이, 다낭등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를 겨냥했다.

자본금 180억원(VND 300,000,000,000)원 중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이 49%출자하고 업무영역은 ①주식위탁매매업무(Brokerage), ②IB업무(Underwriting & Investment), ③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Service), ④ 수탁업무(Custody

45) 김남국,김동재 “금융 산업의 국제화 : 미래에셋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 국제경영연구 제19권 특별호 2008. 10 pp233-234

Service) 이다.⁴⁶⁾

46) 재정경제부, 금융허브지원팀 “금융회사 베트남진출 보고서” 2007. 12 p. 125

제 3 절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

1. 인터넷 플랫폼 활용

과거 사례를 살펴보자면, 유럽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채널을 <표 16>에서처럼 2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 향후, 베트남의 인터넷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채널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유럽 자산관리 이용 고객의 서비스 종류별 인터넷 이용비율

(단위 : 만달러 %)

자산 규모	이용 부문	커뮤니케이션 및 온라인 컨설팅	투자성과 보고	유가증권 거래	금융상품 정보	리서치 보고서
5,000이상		32	29	17	21	10
500~5,000		60	48	31	26	12
50~500		67	50	52	26	7
10~50		57	40	45	19	7

자료 : Price water house Coopers, 2008 저자 제작성

첫 번째로 인터넷 사용용도 측면에서 위 <표 16>을 보면 유럽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의 상당수는 이미 커뮤니케이션/컨설팅 및 투자보고 등의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⁴⁷⁾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채널별 접근성 측면에서도 향후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점포 방문과 전화통화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가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 컨설팅사의 조사에 따르면 좋은 물건과 가격을 위하여 서핑(Surfing)을 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북마크와 같은 인터넷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사이트를 자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사용자는 유용한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방문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다시 찾아올 때,

47) Price waterhouse Coopers, 'European Private Banking Survey', 2008.09

사이트에 대한 재방문고객 다시 말하자면 회사에 대한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고객의 방문횟수가 잦아들면 그만큼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늘어 갈 것이고 거래의 가능성도 훨씬 커질 것이다. 여기서 더욱 생각해봐야 될 것은 구매고객의 만족도는 입소문을 통하여 마케팅 효과를 배가 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반복 구매자가 일회성 구매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이나 투바 비용을 절감시켜준다. 즉, 로열고객의 소개는 웹사이트에 대한 만족도의 척도라 할 수 있고 그 결과, 고객확보와 매출의 증가를 동시 달성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케팅 기법중 하나가 퍼미션(Permission)마케팅⁴⁸⁾이다. 퍼미션 마케팅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우선 인터넷 상에서 얻은 고객정보는 절대적으로 고객이 의도한 목적 이외의 이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되며, 정보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퍼미션은 고객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고객의 회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회사의 마케팅 효과도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퍼미션 마케팅은 단발성의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넷째, 고객의 퍼미션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중심의 마케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퍼미션 마케팅은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Offline 판촉이나 Online 이벤트 등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인터넷으로 고객의 응답률과 니즈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의 퍼미션이 지속되도록 보상방법과 콘텐츠를 강구해야 한다.

48) 꾸준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객충성도를 확보하는 것. 대중 지향적인 무차별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 고객 즉, 개인 지향적이며, 서로간의 신뢰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타겟 마케팅의 일환. Seth Godin 저, 이상필 옮김, “퍼미션마케팅”, 21세기북스, 2000. 6

2. FP의 전문화를 통한 고객과의 접근성 극대화

FP활성화를 위한 내부 경제력구축전략의 중심과제는 FP관련 조직과 정보인프라 관련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P관련 조직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을 실시해야 한다. 베트남은 FP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물론 기업 내부에서도 조직, 관리등 모든면이 초보적인 단계로서 인력채용 및 교육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FP조직 확대에 의한 고정비 지출을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FP 제도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도구 즉, 고객관계 지향적 도구이기 때문에 각 영업점간 또는 본부와 영업점간의 원활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상 고객관리에 필요한 정보인프라 구축 즉,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시급하다. 보험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잠재고객 개척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정보를 축적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고객정보축적은 개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금융정보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여 우수고객과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DB구축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역시 FP확대의 진제 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셋째, 금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FP는 업무 특성상 경제전반, 세제 등 기업상담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제 일반지식 또는 사례별, 고객의 생활주기별 재테크 요령 등 주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포함됨에 따라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해 자체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소속 FP를 대상으로 수시로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FP 자신들이 스스로의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3. 자산운용의 先진출

미래에셋의 성공 전략은 자산운용의 先진출 후 영업기반을 마련하고 증권사의 후속 진출로 영업장 확장에 성공했다. 이미 타 국가의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교두보를 마련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마케팅 효과도 누린 것이다.

2006년 베트남 사무소를 설립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랜 기간 펀드운용과 자산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며 현지 리서치 기반을 구축해왔다. 현재 한국 주재

원을 비롯해 호치민과 하노이 시장에 리서치 인력까지 상주하며 공사로 주식형, 혼합형, IPO 펀드 등을 운용 중이다. 향후 미래에셋자산운용(베트남)은 기존 펀드 운용뿐 아니라 현지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신규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투자공사와 협업을 통해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각각 2007년, 2011년에 설립된 합작 종합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 베트남 법인과 여신전문 금융회사인 미래에셋파이낸스컴퍼니와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자산운용사는 해외에 진출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판단도 하게 됐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네트워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은 해외에 진출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글로벌 은행이나 투자은행에 비해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규모가 작고 네트워크도 부족하며 우수한 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자기자본이 그리 많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에서 자산운용사 최소 설립 자본금은 100억 원이고 외국은 이보다 작다. 또 네트워크도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판매망을 활용해서 펀드를 얼마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지점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대신 뛰어난 소수의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미래에셋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운용 노하우를 결합하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사나 은행에게 주식 매수 주문을 내는 고객 입장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들과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거래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자산운용회사의 국제화가 훨씬 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미래에셋은 해외진출 거점인 홍콩을 먼저 공략 후 홍콩-중국-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진출 순서 역시 자산운용이 먼저 진출 후 증권이 뒤따라가는 순서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미래에셋은 베트남 현지법인이 아시아 관련 펀드를 운용하면서 국내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으는 등 일정한 성과를 냈다. 미래에셋은 자체 역량으로

해외펀드를 운용하고 한국인들에게 해외펀드를 판매하는 전략을 ‘1단계 국제화로 명명했다. 미래에셋은 1단계 국제화 성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단계 국제화 전략을 추진했다. 2단계 국제화 전략의 핵심은 1단계와 달리 국내 투자자가 아닌 해외 투자자에게 미래에셋 펀드를 파는 것이다. 미래에셋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자산운용 역량과 체력을 축적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해외 고객들에게도 자사 우량 펀드를 팔아 운용자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2단계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4월, 국제 사업 담당 부서의 조직과 기능,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이전까지 ‘리스크/경영관리 부문’소속의 국제팀에서 해외진출 업무를 담당했으나 국제 업무를 대폭 확대해 전략기획 본부와 국제1본부, 국제2본부를 발족시켰다. 전략기획부는 ‘리스크/경영관리부문’ 산하로, 국제1,2,본부는 ‘마케팅부문’ 산하 조직으로 편제됐다. 전략기획본부는 해외 법인 설립과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제1본부는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⁴⁹⁾

49) 김남국, 김동재 “금융 산업의 국제화 : 미래에셋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 국제경영연구 제19권 특별호 2008. 10 p. 242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금융지주와 미래에셋의 성장과정과 베트남 시장의 진출 과정, 그리고 향후 비전인 신흥 시장 전문가에 대한 관점과 이를 위한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기업의 성공적인 행보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으며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도 논하여 보았다.

두 기업이 국내가 아닌 해외 글로벌 금융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본다면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기업일 것이다.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베트남 시장 진출은 수익성이나 영속성 확보에 대한 필수한 사업 전략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영업활동에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베트남 시장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영업으로 소비자의 인지도 확충, 자산관리 상품 개발, 서비스 접근성 강화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우리금융 지주회사는 베트남 자산관리 시장에 신탁업 진출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게 한계라고 생각한다.

신탁업이야말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금융회사의 안전한 정착방법의 하나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신탁업은 전통적인 수익 기반 사업으로서 자사가 부담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아주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각화된 수익을 원하는 우리금융 지주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신탁업 경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펀드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수탁액을 크게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래에셋의 공격적 행보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다. 2008년 들어 미국의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미래에셋 펀드도 수익률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2007년까지 높은 수익률을 내

왔던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인사이트 펀드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져가는 운용보수가 여타 해외펀드에 비해 50%가량 더 높은 투자금의 1.5%에 달해 투자자들과 언론은 높은 보수에 비해 성과가 저조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미래에셋의 운용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주가 왜곡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미래에셋의 운용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미래에셋이 사거나 팔았다는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출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미래에셋이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특히 한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이 집중될 경우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을 때 자본시장 전체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제 미래에셋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산운용 능력을 갖춰 한국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급변하는 투자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해 양호한 수익을 내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집중해왔던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지거나, 금융시장 교란으로 전 세계 주가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경우 주식형 펀드 위주로 성장했던 미래에셋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된 노하우와 역량을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의 전반적인 운용 관리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또 미래에셋은 한국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소규모 자산운용 회사에 그치고 있다. 이제 무한경쟁 시장에서 완전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경쟁에서 이기려면 모든 플랫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수익률만 높다고 외국에서 펀드를 잘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마케팅, 정보 제공 등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선행연구의 사례 역시 전무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 산업 분야의 방대함도 있

있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한 좀 더 다양한 진출 전략과 보안점을 도출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면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① 단행본

김선한 (2007), “아시아의 젊은 호랑이 베트남”,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Seth Godin 저, 이상필 옮김, (2006), “퍼미션마케팅”, 21세기북스

최용록 (1996), “해외투자론”, 박영사

② 연구논문 및 자료

- 한국금융투자협회(2011), “베트남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 정계룡, 손승호, 이진경, 이세린(2010), “동남아 전략산업 :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연구보고 pp. 10-34,
- 김남국, 김동재(2008), “금융 산업의 국제화 : 미래에셋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 「국제경영연구」, 19권, pp. 230-238
- 최용록(1996), “해외투자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전략적 연구”, 「무역학회」, 제24권 2호, p. 120.
- 구본성(2008), “국내은행의 성장성과 국제화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pp. 21-23.
- 노택선(2008), “국제 금융공조 하모니를 울려라”, 한국경제신문.
- 서병호(2009),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강종구(2007), “금융기관 해외투자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 경제연구원 제310호.
- 김정동, 전유훈,(2003), “FP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학회, 14권 2호 pp. 109-134.
- 진익(2009)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경영보고서, pp. 113-116.
- 재정경제부 2007), “금융회사 베트남진출 보고서”, 금융허브지원팀 p. 125
-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NFSC>(2011), “금 시장이 베트남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
- 양종식,(2012),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현지화 방안”, 세종대학교, pp. 8-11
- 박근기,(2009), “국내은행 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pp. 7-13
- 정지윤,(2011), “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성장과정과 향후 도전과제”, 고려대학교, pp.12-15
- 호치민 무역관,(2017), “KOTRA 국가정보 베트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p. 247-262

③ 홈페이지

국민경제자문회의 www.neac.go.kr (2018년 4월14일 접속)

금융감독원 www.fss.or.kr (2018년 4월21일 접속)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2018년 4월7일 접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호치민 지부 <http://www.kotra.or.kr/kh>(2018년 4월14일 접속)

미래에셋대우 www.miraeassetdaewoo.com (2018년 4월7일 접속)

베트남 중앙은행 - Investing.com (2018년 4월21일 접속)

베트남 통계자료 <http://www.vinahanin.com/statistics> (2018년 4월 14일 접속)

서울파이낸스 <http://www.seoulfn.com> (2018년 4월29일 접속)

에너지 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5497> (2018년 5월1일 접속)

우리은행 기업소개 spot.wooribank.com (2018년 4월7일 접속)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70626000320> (2018년 5월 1일 접속)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2018년 4월23일 접속)

IBK 기업은행 호치민 지점 <http://www.globalibk.com/home.jsp>(2018년 4월28일 접속)

Abstract

The Study on the Korean Financial Enterprises' Expansion Plan into Vietnam Market.

Ko, Ki Yun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Jeje University

Since 1992, the official tie between Korea and Vietnam, Vietnam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in the South-East Asia next to Singapore.

Korea has had a continuous trade surplus with Vietnam and has invested in the Vietnam for last 10 years as a most important FDI country.

As a Korean financial corporate advanced into the Vietnam, Miraeasset Group has established a successful ground with constantly profits and Woori Financial Group also made a stable market position through building up a local bank corporate.

This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ategy of the Korean financial enterprises to advance into the Vietnam and examine their business state in Vietnam. Wi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and examination, we tried to forecast the performances of the Korean corporates in Vietnam financial market.